



성과중심의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분석체계 연구

연구진

박진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소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ontents

I	충남 지역균형발전정책 현황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1. 충남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04
	2.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14
II	광역자치단체 자체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동향	
	1.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 조례	17
	2.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
III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체계 구축사례	
	1.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체계	30
	2. 전북 동부권사업 평가체계	49
IV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1. 기본방향	61
	2. 평가지표 개발·재편	67
	3. 모니터링 강화	72
	4. 추진체계 정비	74
	참고문헌	77

I

충남 지역균형발전정책 현황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1. 충남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정책추진배경 및 목적

- 충청남도는 천안~대전을 잇는 경부축과 천안·아산 중심의 북부산업권 중심으로 개발 축이 형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서남부권의 불균형 성장 지속
 - 충남의 경우 지역경제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서남부권의 저성장으로 지역 간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발생
- 충남에서 자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처음 추진하던 2000년대 중반에도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역개발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통합적이지 않아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였음
 - 당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역혁신과 지역개발로 크게 나눌 수 있었으며,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은 주로 도로 등 기반시설에 투자되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였음(충청남도, 2007)
- 이에 충남은 2007년에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08년에 자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음
 - 충남 지역균형발전조례는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충남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음

- 2000년대 중반 당시 충남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 그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여 충청남도 전체가 특성있게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음(충청남도, 2007)
-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남 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충남연구원에서 수립한 바 있음 (박진경·김현호, 2019)
 - 당시 4대 권역별 성장거점 동력을 연계하여, 충남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자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도입함
- 제1단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정책(2008~2020)의 목표는 지역 발전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기회확보를 통해서 충청남도의 총체적인 역량 강화 실현, “골고루 잘사는 강한 충남”임¹⁾
 -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충청남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균형발전대상지역에게 지역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 확보
 - 단기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중기적으로는 충남의 신성장축을 구축하며, 장기적으로는 골고루 잘사는 강한 충남 구현
 - 충청남도 공간의 총체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최종 목표
- 제2단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정책(2021~2030)의 목표는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 목적 하에 장소의 변영보다는 사람의 변영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선순환구조를 정착 하는 것임²⁾

1) 충청남도(2007), 「충청남도 균형발전 기본계획(2008-2020)」

2) 충청남도(2019), 「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1단계) 및 기본계획(2단계) 수립 연구」, 충남연구원

-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균등화 전략은 일시적이며,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므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특성화 발전을 통한 잉여가치의 창출, 기회의 균등 보장
- 과거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불합리성에 대한 교정적 균형, 즉 결과의 균등을 추구했으나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자율적인 지역발전의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발전을 추구
- 영역적인 발전과 살기 좋은 지역을 이루기 위해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의 자산을 브랜드화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또한 지역의 창조산업을 육성하여 생활문화공동체와 향토산업 육성 및 로컬푸드 생산과 유통 활성화, 지역문화융성을 통한 기초생활의 발전 기초 마련
- 충남 지역 내에서 지역발전의 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 구축, 연계, 융합, 연대, 복합을 통한 자립 역량 구축 및 경쟁력 확보

정책대상 및 선정기준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 지역은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하고 있음
 - 지원대상지역은 조례 제3조에 의거 ①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 ② 주민의 취업 기반이 미약한 시군 ③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 ④ 사회 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군을 고려하여 선정(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시군별 발전수준은 다음과 같이 17개 지표별 표준화점수(Z-score)를 합한 값이 음(-)인 시군 중에서 선정
 - 17개 지표는 ① 인구증감률 ② 인구밀도 ③ 노령화지수 ④ 재정력지수 ⑤ 소득세할 주민세 ⑥ 천 명당 사업체수 ⑦ 천 명당 사업체종사자수 ⑧ 종사자 증가율 ⑨ 도로율 ⑩ 상업·공업 지역 면적비율 ⑪ 상하수도 보급률 ⑫ 노후주택비율 ⑬ 1인당 공원면적

⑭ 면적당 학교수 ⑮ 천 명당 문화·체육시설수 ⑯ 천 명당 의료종사자수 ⑰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수를 말함(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 Z값은 (원값-평균값)/표준편차로 구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2단계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지역은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금산군, 청양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의 총 9개 지역임
 - 제1단계 사업에서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지역인 홍성군 및 예산군을 제외하고, 2007년에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8개 시군을 선정하였음
 - 2007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6개 지표로 8개의 시·군을 선정하였으나, 지금은 17개의 지표로 Z값에 따라 평균이하지역을 선정하고 있음

표 1-1 | 충남 지역균형발전정책 대상

구분	정책대상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2008~2020)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2021~2030)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표 1-2 | 충남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인구증감률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감율
인구밀도	전년도 말 주민등록 인구수를 행정구역면적으로 나눈 값
노령화지수	전년도 말 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로 나눈 값
재정력지수	최근 5년간 시군의 기준재정수입의 합을 기준재정수요의 합으로 나눈 값
소득세할 주민세	최근 5년간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의 평균값
천 명당 사업체수	인구 천 명당 사업체수
천 명당 사업체종사자수	인구 천 명당 사업체종사자수

구분	선정기준
중사자 증가율	최근 5년간의 중사자수 증가율
도로율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개통도로의 연장을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
상업·공업지역 면적비율	최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합한 면적을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
상하수도 보급률	최근 상수도보급율과 하수도보급율의 평균값
노후주택비율	20년 이상된 주택수를 전체 주택수로 나눈 값
1인당 공원면적	구성된 도시공원면적을 인구수로 나눈 값
면적당 학교수	최근 초·중·고등학교수를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
천 명당 문화·체육시설수	인구 천 명당 문화·체육시설수
천 명당 의료종사자수	인구 천 명당 의사수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수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수

자료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 충남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07년에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08~2020)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21~2030)이 추진되고 있음
 -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08~2020)은 198지구에 총사업비 10,909억 원이 투입되었음
 -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21~2030)은 현재 제1기 사업이 84지구에 총사업비 6,9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추진 중임
- 충남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개발계획, 그리고 연차별 계획인 시행계획으로 구분
 - 기본계획은 10년 단위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말하고, 개발계획은 5년 단위의 지역별 특성화된 성장동력 사업 지원계획을 말하며, 시행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중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 단위사업 집행계획을 말함

표 1-3 | 충남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상 지구수와 총사업비

구분	지구수/총사업비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2008~2020)	제1기(2008~2012)	54지구 4,452억 원(국 1,335 / 도 1,418 / 시군비등 1,699)
	제2기(2013~2017)	68지구 4,104억 원(국 942 / 도 1,290 / 시군비등 1,872)
	제3기(2018~2020)	76지구 2,353억 원(국 309 / 도 1,012 / 시군비등 1,032)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2021~2030)	제1기(2021~2025)	84지구 6,949억 원(국 227 / 도 3,281 / 시군비등 3,441)
	제2기(2026~2030)	미정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08~2020)³⁾

- 충남의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08~2020)에서는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 역동적인 산업경제, 지역고유의 관광 산업화,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을 추진과제로 제시
 - 균형발전대상지역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과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
 - 지역자산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역동적인 산업경제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의 보존과 관광 산업화
 - 도시적인 편리성과 전원적인 쾌적함이 조화를 이루는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3) 충청남도(2007), 「충청남도 균형발전 기본계획(2008-2020)」

표 1-4 | 충남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08~2020)의 주요추진과제

단기(2010년)	중기(2015년)	장기(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거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지 공급 - 신성장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지 지속공급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지 지속 공급 - 신성장기반 전후방산업의 체계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거점으로 첨단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산업 등 지역특성과 연계한 신성장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관광지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존자원의 개발 - 관광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근교형 영농·관광·여가지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반 확대 •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문화, 복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발전대상지역 관광벨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내륙 연계교통망 구축 - 대중국, 아시아 교류 거점으로 세계적 관광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사업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 대한 확신 - 지속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기좋은 도시 및 지역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살고싶은 도시 및 지역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한 주거환경과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21~2030)⁴⁾

- 충남의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1~2030)에서는 통합적 균형발전의 추구, 충남 미니멈(Chungnam Minimum)의 설정 및 보완,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관련 서비스의 합리화·효율화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
- 국민의 평등권에 의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한 향유 권리를 보장하고 공간적으로 실현하는 통합적 균형발전의 추구
 - 균형발전이 단순한 지역의 경제적 역량과 생산성을 겨냥뿐만 아니라 지역 간, 지역 내 사회통합의 촉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에 이바지
- 지역별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누려할 최소한의 삶의 질과 이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국가차원의 National Minimum, 지방차원의 Chungnam Minimum을 설정하고, 충남 미니멈(Chungnam Minimum)의 설정 및 보완

4) 충청남도(2019), 「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1단계) 및 기본계획(2단계) 수립 연구」, 충남연구원

- 지역주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최소기준을 기본권 형식으로 발표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탐색적·전략적 후속 조치 지속 추진
- 지역의 발전목표의 명확화 및 지원의 차등화, 구조원인별 개선대책 마련
 - 발전수준별 경제력, 생활수준 차이에 대한 고려 없는 개발정책이나 재정지원을 탈피, 지역발전 격차 평가의 보완·시행 및 차등지원
- 저성장시대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므로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관련 서비스의 합리화·효율화
 - 시장기능의 감소, 유휴토지의 발생, 인구 감소 지속 등에 대응한 행정권·토지이용·서비스의 합리화 및 효율화
- 물리적 시설중심에서 벗어난 혁신지향적 산업투자 확대 및 관련분야의 창조적 융합
 - 그동안 지역산업의 혁신과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각 분야별 분절적 추진으로 자율 경제구조 창출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혁신지향적 산업투자 + 일자리 + 복지 등 관련 분야 간의 창조적 융합
- 일자리 복지,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s-Delivery Service)의 균등화·효율화
 - 지역의 신산업, 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추진체계의 정립,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발굴 및 공급, 기존의 공급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난 고용률 확대에 초점(Start up vs Scale up)

표 1-5 | 충남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2021-2025)의 시군별 추진현황

구분	지구수	총사업비 (백만 원)	사업명
공주	9	119,028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사업, 백제문화 스타케이션 조성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조성, 치매안심 행복누리센터 조성,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조성,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설치, 유구 색동수국정원 조성, 선돌 자연힐링 마을 조성
보령	6	12,177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보령시 가족센터 건립, 주요면 생활문화 플랫폼 조성 사업,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2022 보령해양머드 관광 기반 구축,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사업,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조성, 고대도 별빛정원 조성,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농업 종합정보 지원기반 구축
논산	7	10,410	논산스마트농업복합단지, 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연무 복합커뮤니티센터, 물빛 복합 문화센터, 강경읍 활력채움터, 논산시 복합문화체육센터, 기차길옆 지역공동체 문화 예술놀이터, 황산벌 계백장군 호국계승관 현대화, 손앓손 Job Go, 희망아우름 복합 공간,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
금산	9	19,744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 인삼 활성화 사업, 금산 수삼 가격 정보지원센터 운영, 신 소득작목 미래 농업 역량기반 강화,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 금산군 당직의료기관 지원, 치매 커뮤니티센터 조성,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금산 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
부여	8	14,100	부여일반 산업단지 조성, 부여 문화·예술·교육타운 조성, 제2의 고향마을 조성사업, 중간지원 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스마트팜 콤플렉스(Complex) 지원센터 조성, 부여군 로컬푸드 순환 경제체제 구축사업, 서동요 역사관광지 활성화사업,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서천	8	17,400	Re-Fine 장항; 문화재생 활력사업, 장애인복지관 확장 및 보호작업장 신축, 서천군 특화 상권 재생사업,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건립, 서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미래환 경농업 서비스 지원 기반 구축, 서천형 공유농업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서천군 생활 체육관 건립,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
청양	6	10,516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 청양군 복합 가족문화센터 건립,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사업,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청양군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확충사업,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 지천100리, 생태복원 사업, 다락골 관광 자원 정비사업, 칠갑산 천문대(스타파크) 보완사업
예산	10	9,791	예산 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 조성, 예산 1100년 기념관 조성, 도시숲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 구축, 예산군 선진 농업기반 조성,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삼교천 체육공원 조성, 예산 청년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 예산 1100년 사람길 조성
태안	7	12,872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가족 복합 커뮤니티센터,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 태안 제2 농공단지 조성, 태안 청년 창업지원, 태안관광서비스 체질 개선,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도	1	12,018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 현재 충남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제안사업, 경쟁공모사업, 시군자율사업으로 유형이 다양화되어 추진되고 있음
 - 제1단계는 각 시군에 실링을 배정하고 시군별로 사업제안을 받아 선정하였으나 현안사업 위주, 비효율적 운영 등 문제가 발생하여 유형별 중점방향을 명확화하고, 공모를 통해 경쟁성을 부여, 내실 있는 사업발굴 추진(박진경·김현호, 2019)

추진체계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2007년에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에는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활용하여 자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음(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2022년 5월 검색)
 - 지역균형발전조례는 충청남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충남도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자치행정국 산하 균형발전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평가, 균형발전위원회 운영·관리 등을 담당함
 - 도 사업부서에서 시·군 사업부서와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시·군 사업 부서에서 도 사업부서와 함께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실제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의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음
 -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2022년 5월 검색)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임(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2022년 5월 검색)

2.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사업평가체계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매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시군에서 추진하는 자체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군은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다만 5년 단위의 개발계획이 끝나는 시점에 전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충남연구원에서 별도로 추진하는데, 종합평가는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함
 - 제1단계 제3기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단계, 집행단계, 운영관리단계로 나누어 2019년에 종합평가를 시행한 바 있으며, 제2단계 제1기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서 제1단계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제2단계 제1기 사업은 사업의 진행상황, 추진실적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2021년 말에 추진하였음
 - * 제1단계 제3기 : 8개 시·군, 2018~2020년, 집행단계 평가, 운영관리단계 평가
 - * 제2단계 제1기 : 9개 시·군, 2021~2021년, 계획평가, 집행단계 평가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는 자치행정국 산하 균형발전과에서 총괄하며, 균형발전위원회와 충남연구원, 도 관계자 등 13인이 참여하는 평가반을 구성하여 추진
 - 대상시군 민간전문가인 지역균형발전위원, 산업경제분야, SOC분야, 관광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충남연구원, 균형발전팀장 등 담당주무관 등으로 평가반 구성
- 주어진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대해서 평가반에서 7점 척도의 점수를 기입하고, AHP 조사에 의거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함
 - 사업단계별로 중점 검토사항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반영함

표 1-6 |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업단계별 항목별 평가기준

구분	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계획	계획의 타당성	사업 목적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균형발전 개발계획과의 부합 여부 • 지자체 발전방향과의 부합 여부
		관련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유사시설 조성 및 운영 현황 검토 • 지역 내 유사시설로 인한 경쟁 가능성
		이용 수요 확보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관련 이용수요 목표와 추정방법 적절성 • 사업 관련 수요 추이 적절성
성과 계획	총실성	사업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 세부사업 계획 내용, 재원조달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 제시된 사업내용의 구체화 수준
		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이행 수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전략-사업 간의 성과지표 인과관계의 적정성
성과 계획	성과 계획	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결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지표 산출 경위(투입-과정-산출-결과)산출의 논리적 적정성
		성과지표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산출의 현실성
		계획된 예산의 집행 여부 (계획대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예산 대비 실제 예산 집행액 수준
집행 및 관리	사업 관리 적절성	모니터링, 평가 자체(충남도) 시행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평가의 자체 시행 여부 및 적정성
		모니터링 평가 내용의 반영, 개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 외부기관, 전문가의 모니터링, 평가 내용의 반영 정도
		사업 공기 조속 단축을 위한 노력 (문제점 해결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 단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 시행 정도
집행 및 관리	사업추진 체계	전담체계 구축 운영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혹은 민간 등 전담조직 구축 및 운영 수준
		사업추진 협의체 등 민간, 전문가 참여 노력 및 반영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자체 점검 및 평가시스템 운영 현황
		민원 등 대응 조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등 대응 및 조치 여부
집행 및 관리	갈등 대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노력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노력 정도
		사업지연 대응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지연 시 계획에 입각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정도
		사업 완료 후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완료 후 운영관리 계획대비 계획된 성과지표의 적정성
운영관리 및 성과환류	성과 달성 및 환류	사업 완료 전 사업평가 결과의 효과적 추진 여부 및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완료 전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 평가 결과의 반영 정도
		평가결과의 제도개선, 예산편성에 환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완료 전 평가 결과에 대한 제도개선, 예산편성에의 적용 등의 수준
		사업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관리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운영관리 및 성과환류	운영 체계	유지관리 주체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관리 주체의 명확성 및 구체성
		유지관리 운영비 확보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운영비 조달 및 확보 수준
		정량적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적 파급효과 산출의 적정성 여부
파급 효과	파급 효과	수혜주민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주민의 수혜 수준
		홍보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신문, SNS 등을 통한 대외적 홍보 실적
		후속사업 여부 및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후속 (연계)사업 수립 여부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 충남은 첫째,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매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군 자체평가로 대체하고 있어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시군은 자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평가지표를 다르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 주로 행정 절차 이행여부와 예산 집행률, 홍보건수, 수혜인구, 매출액 등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음
 -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업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충남은 현재 5년 단위의 개발계획이 끝나는 시점에 전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많은 지표수에도 불구하고, 각 단계별 성과지표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사업성과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정책목표 및 사업의 성과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결과지표 중심의 정량적인 성과 지표 설정과 단순화 필요
- 셋째, 지역균형발전사업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성과지표에 의거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성과창출 도모 필요
 -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체계를 성과중심의 성과평가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운영평가가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성과평가 중심의 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II

광역자치단체 자체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동향

1.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 조례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

- 현재 우리나라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포함되어 있는 시·군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별도로 자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박진경·김현호, 2019)
 - 전국 최초로 관련조례를 설치한 지자체는 전라북도로 「동부권발전 지원조례」를 제정(2006.5.12)하고 특별회계를 설치(2010.11.5)하여 2011년부터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박진경·이제연, 2018)
 -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조례와 시행규칙을 모두 제정한 지자체는 특·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유일하고, 도 지역 중에서는 시행규칙을 마련 중인 전라남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자체가 조례와 시행규칙을 모두 제정하였음
- 2022년 5월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례는 9개 도지역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 제정되어 있음
 - 충남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와 별도로 2020년에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있음
 - 전남의 경우에는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2010년에 먼저 제정하였으나 2019년에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조례를 추가로 제정함

- 특·광역시 경우에는 8개 지역 중에서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7개 지역이 제정되어 있음

표 2-1 |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

구분	조례	시행규칙	특별회계
서울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2003.3.15)	-	특별회계 (2019.1.3)
부산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2006.5.10)	-	특별회계 (2022.2.16)
대구	•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2007.6.11)	-	-
인천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2005.7.25)	-	-
광주	•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2007.2.1)	시행규칙 (2011.2.15)	-
울산	•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2012.10.11.) (2020.4.9 폐지)	-	-
대전	•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2019.4.26)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균형발전 지원 조례(2013.1.7)	-	특별회계 (2013.1.7)
경기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2012.12.28)	시행규칙 (2013.5.1)	특별회계 (2012.12.28)
강원	•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2019.12.27)	시행규칙 (2020.7.3)	특별회계 (2019.12.27)
충북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2007.4.13)	시행규칙 (2007.5.18)	특별회계 (2007.4.13)
충남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2007.3.30) •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조례(2020.4.1)	시행규칙 (2007.5.10)	특별회계 (2007.3.30)
전북	•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2006.5.12)	시행규칙 (2006.5.10)	특별회계 (2010.11.5)
전남	•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조례 (2019.7.9) • 전라남도 시·군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2010.4.3)	-	특별회계 (2019.7.9)
경북	•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3.2.18)	시행규칙 (2016.5.9)	특별회계 (2015.9.24)
경남	•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2011.8.18)	시행규칙 (2012.4.5)	특별회계 (2011.8.18)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2012.7.18)	시행규칙 (2014.11.12)	특별회계 (2011.8.18)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박진경(2022), "광역주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 울산광역시시의 경우 2012년 10월에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0년 4월에 이를 폐지하였음
-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는 아니나 2019년에 지역균형발전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조례에서 주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발전역량을 증진 하거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
 - 도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지역발전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

표 2-2 | 광역자치단체(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조례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의

구분	정의
경기	• “지역균형발전”이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강원	• “지역균형발전”이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충북	• “지역균형발전”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충남	•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 중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제1호의 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 안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것
전북	• “동부권 발전사업”이란 식품 관광 등 동부권의 특화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전남	• “지역균형발전”이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 발전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경북	-
경남	• “지역균형발전”이란 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제주	• “지역균형발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 지역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2년 5월 12일 검색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조례의 구성

-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조례는 일반적으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전체의 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박진경·김현호, 2019)
 - 조례는 주로 총칙,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계획, 특별회계설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됨

표 2-3 | 광역자치단체(도지역)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례의 구성

구분	총칙	지역균형발전계획 및 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	균형발전위원회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도지사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지원대상지역 선정)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 제10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2조(구성과 운영) • 제13조(회의) • 제14조(수당 등) • 제15조(준용) • 제16조(시행규칙)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 제8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 제10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 제11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 제1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4조(구성과 운영) •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 제16조(회의) • 제18조(간사) • 제19조(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20조(수당) • 제21조(준용) • 제22조(시행규칙)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시행계획 수립) • 제6조(불균형 실태조사) • 제7조(지역균형발전전략 사업 투자협약제 운영) • 제8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도·점검) • 제9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 제11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 제12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 제1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균형발전위원회 설치) • 제15조(구성과 운영) • 제16조(회의) • 제17조(수당) • 제18조(지역발전연구센터 및 권역별 연구팀 운영)

구분	총칙	지역균형발전계획 및 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	균형발전위원회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기본 및 개발계획의 수립) 제5조(사업시행계획의 수립·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설치와 기능) 제10조(구성과 운영) 제11조(회의) 제12조(수당 등)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조(목적) 제2조(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동부권 발전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의 선정) 제5조(평가 인센티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동부권발전위원회 설치) 제9조(구성) 제10조(살비변상 등) 제11조(시행규칙)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시책반영) 제6조(지원대상지역 선정) 제7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제8조(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 제9조(광역단위 사업의 추진) 제10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13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제14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16조(구성과 운영) 제17조(회의) 제18조(분과위원회) 제19조(간사) 제20조(시행규칙)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조(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장(지역활성화지역 지원 및 특별회계) 제22조(우선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3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24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25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26조(예비비) 제27조(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장(공청회) 제3장(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제4장(지역개발조정위원회) 제5장(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제17조(간사 및 서기) 제18조(수당 등)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조(목적) 제2조(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삭제)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6조(지원지역 선정) 제7조(시책의 반영) 제8조(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 제9조(지도·점검 및 평가) 제10조(사업의 지정공고) 제11조(지정의 효력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24조(지원우대) 제25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 제13조(구성) 제14조(임기) 제16조(회의) 제17조(간사) 제18조(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제19조(수당 등) 제20조(제주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치) 제21조(운영세칙)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2022년 5월 12일 검색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계획 및 평가

-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계획은 주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며, 문화적인 전통과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권역별 개발계획, 시행계획을 포함
 - 최근에 경기도와 강원도, 전남이 조례를 정비하고, 세부적인 계획의 수립과 계획 내용 등을 갱신하여 도 지역의 조례는 비슷한 계획 및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음
 - * 경상북도의 경우 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는 있지만 계획이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음
- 광역자치단체는 주로 5년 단위의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하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매년 실적평가와 컨설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박진경·이제연, 2018)
 - 추진실적은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게는 인센티브 지급 가능

표 2-4 | 광역자치단체(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계획 및 평가

구분	계획의 수립	계획내용	평가인센티브
경기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한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 우수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강원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권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한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충북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발전지역의 균형발전 목표 •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지역별·권역별 균형발전 추진사항 • 연차별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별 시행계획 지도·점검 • 연 1회 이상 종합평가 및 컨설팅 • 우수 시군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가능

구분	계획의 수립	계획내용	평가-인센티브
충남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 지리적 특성 및 문화적 전통을 고려한 개발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연차별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전북	• 5년 단위 발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권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 동부권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경제적 자원 등을 고려한 식품·관광 등 개발계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실태 종합평가 • 평가결과 사업계획에 반영 및 우수 시군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가능
전남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의 기본방향,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협력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사람, 공간, 산업, 시군 간 상생협력, 투자자원조달의 5개 분야) •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 2개 이상 광역단위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평가결과는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 우수 시군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경북	•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 지역활성화지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계획 평가
경남	• 5년 단위 개발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한 개발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 연차별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평가결과는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제주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 4개 권역별 균형발전방안 및 추진계획, 5개 분야(사회복지보건의료, 환경도시교통,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육)별 추진전략 • 연차별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1회 종합평가 및 컨설팅 •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우수 행정시에 인센티브 지급 가능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2년 5월 12일 검색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 광역자치단체가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주로 인구와 고령화 정도, 주민 소득과 취업기반 수준, 지방재정 수준, 사회기반시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발전도를 측정하여 선정함
 - 경북은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는 항목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북의 경우에는 동부권, 즉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의 6개 지역으로 고정되어 있음
- 인구변수는 주로 최근 5년간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지수를 주로 사용하나, 인구밀도(경남) 등의 지표를 추가로 이용하기도 함
 - 지방재정 지표는 최근 5년간의 재정력지수, 소득은 지방소득세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득 및 취업 지표는 주로 사업체수나 산업종사비율 변수를 사용
 - 사회기반시설 수준은 도로율이나 상·하수도 보급률, 노후주택 비율, 공원면적 등을 지표로 사용

표 2-5 | 광역자치단체(도지역)의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구분	항목	선정기준
경기	• 인구, 고령화	• 시군의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 고령화율(총인구수÷65세 이상 인구수)
	• 취업기반수준	• 시군의 최근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율
	• 지방재정수준	• 시군의 최근 5년간 경제개발비 총액(세출예산 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의 평균
	• 소득수준	• 시군 최근 5년간 1인당 지방소득세 평균
	• 사회기반시설수준	• 상·하수도 보급률 평균, 종합병원 병상수(100병상 이상 환자수용 의료기관), 도시가스 보급률, 철도역의 밀도
강원	• 시군별 발전도	• 인구, 고령화
		• 취업기반수준
		• 지방재정, 소득수준
		• 사회기반시설수준
충북	• 저발전지역	• 지역발전도를 조사 분석하여 매 5년마다 선정

구분	항목	선정기준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고령화 취업기반수준 재정 및 소득수준 사회기반시설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감율, 인구밀도, 고령화지수 (65세 이상 인구수÷14세 이하 인구수) 재정력지수, 소득세할주민세, 천 명당 사업체수, 천 명당 사업체 종사자수, 종사자 증가율 도로율, 상업·공업지역 면적비율, 상하수도 보급률, 노후주택비율, 1인당 공원면적, 면적당 학교수, 천명당 문화체육시설수, 천명당 의료종사자수, 영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기반의 취약성, 소득수준 고령화 심각성정도 취업기반 미비성 정도 사회기반시설 낙후 정도 	-
경북	-	-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고령화 취업기반수준 지방재정 및 소득수준 사회기반시설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부문: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인구밀도 재정 및 소득부문: 최근 5년간 재정력지수와 소득세할주민세총액 고용 및 산업부문: 천명당 사업체수(50인 이상 사업체수)와 천 명당 사업체 종사자수 공공인프라부문: 도로율, 상하수도보급률 생활여건 및 환경부문: 노후주택비율, 1인당 공원면적 교육 및 문화부문: 면적당 학교수, 천 명당 문화체육시설수 보건 및 복지부문: 천 명당 의사수,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수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고령화 취업기반 수준 산업 및 소득수준 사회기반시설수준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2년 5월 12일 검색

2.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자치단체 자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기간과 방법

- 지방재정법에 의거 광역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자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최초로 설치한 자치단체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근거로 각각 3월(2007.3.30)과 4월(2007.4.13)에 특별회계를 설치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특광역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도지역 중에서도 강원과 전남을 제외한 7개 도에서 자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광역 내 시군 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임(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5월 12일 검색)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기간과 지원내용이 각기 다르고 재원을 조성하는 방법도 상이함
 - 주로 지원대상이 되는 시군의 재정상황이나 발전수준,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며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충청남북도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는 시군별 발전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남의 경우에는 자체재원의 확보결과나 시군의 관심도,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표 2-6 | 광역자치단체(도지역)의 자체 균특회계 기간과 지원방법

구분	지원방법	기간	관리운영
경기	• 지원대상 시군의 재정상황 및 발전수준, 지원대상지역 선정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준용
강원	• 지원대상 시군의 발전수준, 시행계획 평가결과, 시군의 관심도 및 자체재원 확보현황, 단위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2023년 12월 31일까지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준용

구분	지원방법	기간	관리운영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의재정상황, 불균형실태조사결과,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와 보조비율 차등지원 가능 둘 이상 낙후지역 시군 공동 추진의 경우 예산 우선 반영 	-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준용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시군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준용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지역에 대해 차등지원은 하지 않지만 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 지급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 준용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의 재정상황, 지원대상지역의 발전수준, 지원대상지역 선정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
경북	-	-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준용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시군의 발전수준 종합점수, 시행계획 평가결과, 자체재원 확보결과, 시군의 관심도,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 준용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지역과 시행계획의 종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와 보조비율 우대 가능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 준용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2년 5월 12일 검색

광역자치단체 자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 광역자치단체 자체 균특회계 세입은 대부분 도 보통세 전입금과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시도자율편성사업 도배정분으로 설치하였으나 2018년 재정분권 추진 이후 균특회계사업이 대거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음
 - 전북의 경우 최근 이를 삭제하고,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자체 균특회계를 운용
- 도 보통세의 일정비율은 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조성되고 있는바 경기도와 전남의 경우 2% 이내로, 충청남북도와 경상남북도,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 5%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채와 기타 수입금을 이용하여 세입으로 하거나 균특회계 인센티브를 활용하기도 함
- 세출은 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지출과 사업비 지원, 위탁사업비 지원 및 예비비 등으로 구성
 - 자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방식의 경우 충북과 충남은 지원대상지역의 발전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균등배분하고 있음

표 2-7 | 광역자치단체(도지역)의 자체 균특회계 세입과 세출

구분	세입	세출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보통세 2%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 •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도 배정분의 5% •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지출 • 사업비 지원 • 위탁 사업에 대한 지원 • 그 외 필요한 경비의 지원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보통세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 •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 • 협력사업비의 50% 이내 • 균특회계 사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의 30% 이내 • 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지출 • 사업비 지원 • 위탁 사업에 대한 지원 • 그 외 필요한 경비의 지원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보통세 5% 이내 전입금 •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도 배정분의 5% •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수입금 • 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 지출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기타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 지원 • 예비비 등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보통세 5% 이내 전입금 •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도 배정분의 10% •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 지출 • 예비비 등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 그 밖의 수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권 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동부권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 지출 • 예비비 등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보통세 2% 이내 전입금 •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도 배정분의 5% •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 지출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기타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 지원 • 예비비 등

구분	세입	세출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보통세 5%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 정부 보조금 •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품 •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용자 비용 및 종합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비용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낙후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보통세 5%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도 배정분의 10% •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의 지출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 이내 • 제주개발공사 출차이익배당금의 50% 이내 • 균특회계 제주계정 배분액의 5% 이내 • 협력사업비 5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지출 •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에 대한 지원 • 예비비 등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2년 5월 12일 검색

III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체계 구축사례

1.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체계⁵⁾

정책추진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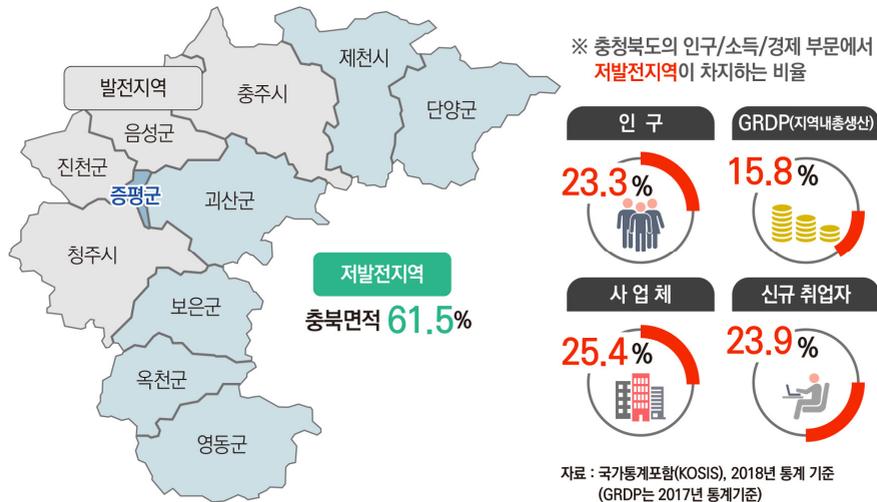
- 3개 시, 8개 군의 11개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진 충청북도는 청주를 포함한 중부권에 인구와 산업시설이 집중되면서 그 밖의 시·군 지역들은 상대적인 개발의 부재로 인해 성장지표의 균형에 많은 차이가 발생
 - 2018년을 기준으로 도 전체 인구의 51.9%, 종사자수의 49.2%가 청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진천·음성군 또한 신성장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충주댐·대청댐과 소백산, 속리산, 월악산 등 3대 국립공원이 있는 남부·북부권의 저발전 심화
 - 충청북도의 인구, 소득, 경제 부문에서 저발전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발전지역(중부권, 전체 면적의 약 38.5%) 대비 약 2~4배 정도의 격차를 보임
-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 및 유출현상이 심화되어 남북부권 지역의 낙후 및 경제적 쇠퇴를 유발하였고, 특히 낙후지역 주민들의 정책 소외의식이 확산되었으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시대 도래에 따른 지역소멸의 우려 증대
 - 지역불균형 문제는 도민의 통합 및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어 충청북도는 각 시·군 및 권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함

5) 이하 충북 사례는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이 원고작성에 참여하였음

- 이에 2004년에 충북연구원에 ‘지역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도내 지역 간 불균형 분석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각 시군 및 권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시작

* 충북연구원에서는 저발전지역의 그룹화로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역발전을 이끌 전략 사업의 선정과 추진을 위한 사업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충북도 균형발전본부 설치와 시·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저발전지역의 잠재력 발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

그림 3-1 | 충북의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



자료 :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http://balance.chungbuk.go.kr/>)

- 충북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07년 7월에 1단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략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작되었음
 - 2008년에는 ‘新지역발전 2020’을 수립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써 시군별 특화산업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시작함(박진경·이제연, 2018)
 - 충북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1단계(2007~2011), 2단계(2012~2016), 3단계(2017~2021)를 거쳐 4단계(2022~2026)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충청도에서는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의 격차 완화를 위한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민선7기 도정목표에 맞추어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이끌 수 있는 사업 선정 → 「함께하는 충북」 실현(박진경·이제연, 2018)
 -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신성장산업 중심의 특화산업 추진
 - *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도내 저발전지역 대상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올해로 16년차(1단계 사업 시작연도 기준)에 접어들었음

정책대상 및 선정기준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저발전지역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시군의 지역발전수준을 분석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기준으로 한 지역발전도 지표는 소득, 생활, 복지, 지역개발 등 4개 부문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화 분석에 따라 결과 값이 현저히 낮은 시·군을 저발전지역이라 칭함(박진경·이제연, 2018)
 - 대상지 선정기준인 지역발전도 지표는 각 단계별로 정부 지역발전정책 연계 지표 개선, 유사·중복성 지표 제외, 각 부문별 균형을 이루는 지표 선정 등을 이유로 개선 과정을 거치고 있음(박진경·이제연, 2018)
- 지표분석 결과 값은 시·군 간 발전도의 상대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사업 대상인 저발전지역 선정 자료로만 활용됨(박진경·이제연, 2018)
 -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조례 제 12조에 의거, 지역발전도 차이에 따라서 사업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함
- 충북도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소득부문과 생활부문, 복지 부문, 기관입지부문 등 다양한 부문의 지표를 종합하여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을 구분
 - 이러한 지표는 지역발전정책 연계와 삶의 가치관 변화 반영, 유사중복지표 제외, 각각의 부문별 지표 간 균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그림 3-2 |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정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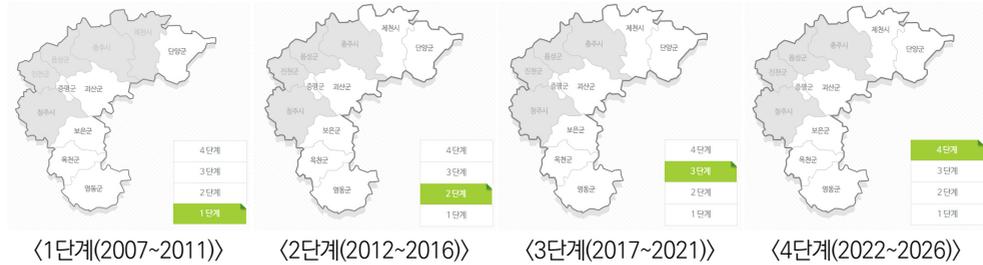


그림 3-3 |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3개 지표	7개 지표	7개 지표	10개 지표
인구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 1인당 지방소득세
산업·경제·소득	1인당 재산세, 1인당 제조업 종사자수, 1인당 생산자 서비스 종사자수, 1인당 소비자 서비스업 종사자수	총사업체 종사자 비율	GRDP	GRDP, 천 명당 총사업체 종사자수
지역개발	도로포장률, 1인당 도로연장	도로포장률	도시적 토지이용률, 지가상승률	지가변동률, 노후주택비율
문화복지	문화공간수, 1인당 의사수,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수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수, 1인당 의사수	천 명당 병상수	천 명당 의료인력·병상수, 문화복지시설 접근성
기관입지	도기관의 지역별 종사자수			
대상지역 및 총사업비	6개 군 (총 사업비 : 1,200억 원)	7개 시·군 (총 사업비 : 2,550억 원)	7개 시·군 (총 사업비 : 3,930억 원)	7개 시·군 (총 사업비 : 3,806억 원)
	A그룹 (도비 80%) 괴산, 보은	A그룹 (도비 70%) 괴산, 영동	A그룹 (도비 65%) 단양, 괴산	A그룹 (도비 60%) 괴산, 단양
	B그룹 (도비 70%) 증평, 영동	B그룹 (도비 65%) 보은, 옥천	B그룹 (도비 60%) 보은, 영동	B그룹 (도비 55%) 영동, 보은
	C그룹 (도비 65%) 옥천, 단양	C그룹 (도비 60%) 단양, 증평 - (도비 55%) 제천	C그룹 (도비 55%) 옥천, 제천 - (도비 45%) 증평	C그룹 (도비 50%) 옥천, 제천 - (도비 40%) 증평

자료 :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http://balance.chungbuk.go.kr/>)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 충북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07~2011),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12~2016),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17~2021)을 거쳐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22~2026)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림 3-4 |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정



자료 :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http://balance.chungbuk.go.kr/>)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07~2011)⁶⁾

- 사업기간 : 2007~2011(5년간)
- 총사업비 : 1,200억 원(도비 788, 군비 412)
- 대상지역 : 발전도가 음(-)인 6개 군(괴산, 보은, 옥천, 영동, 증평, 단양)
- 추진사업 : 전략사업, 공모사업, 인센티브사업
 - 전략사업 :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신규사업, 시·군별 특화사업 선택과 집중 추진
 - 공모사업 : 지역발전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사업, 순위에 따라 그룹별 차등지원
 - 인센티브사업 : 전략·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상위 3개 지역 차등지원
- 재원 :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 지원방식 : 지역발전도에 따라 도비지원 비율 차등화
 - A그룹(괴산, 보은) : 도비 80%, 군비 20%
 - B그룹(증평, 영동) : 도비 70%, 군비 30%
 - C그룹(옥천, 단양) : 도비 65%, 군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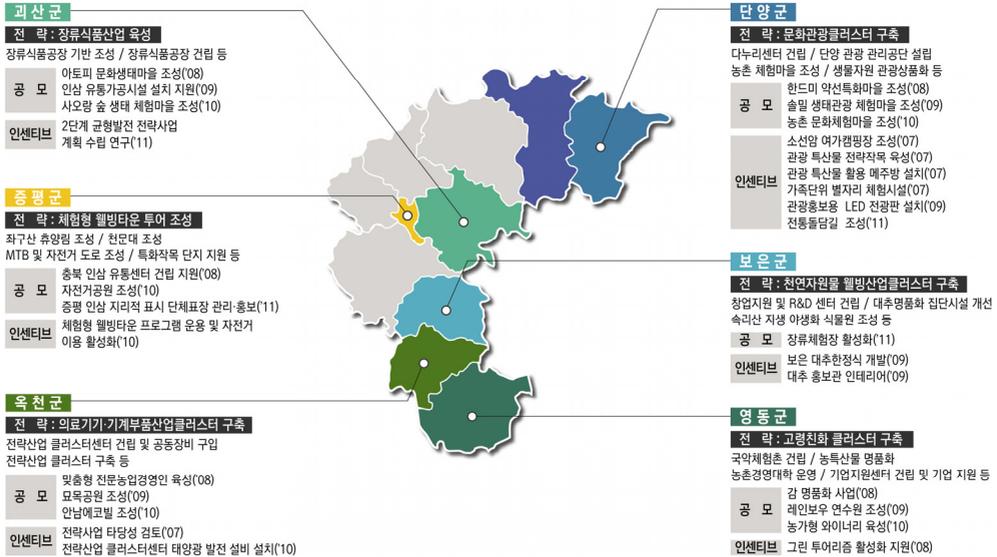
표 3-1 | 충북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07~2011)

구분	내용		
지원대상	저발전 6개 군(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총사업비 1,200억 원 (도비 788, 군비 412)	전략사업	974억 원(도비 644, 군비 310)	
	공모사업	210억 원(도비109, 군비 101)	
	인센티브사업	16억 원(도비15, 군비1)	

자료 : 충북연구원(2022), 「충청북도 균형발전정책 15년사(초안)」

6) 충북연구원(2022)

그림 3-5 | 충북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07~2011)



자료 : 충북연구원(2022), 「충청북도 균형발전정책 15년사(초안)」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12~2016)⁷⁾

- 사업기간 : 2012~2016(5년간)
- 총사업비 : 2,550억 원(균특 372, 도비 1,262, 시·군비 853, 기타 63)
- 대상지역 : 발전도가 현저히 낮은 7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 전략사업(7개 시·군) :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 공모·균특사업(6개 군) :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 협약사업(1개 군) : 보은(보은산업단지 조성)
- 추진사업 : 전략사업, 공모사업, 협약사업, 행복마을사업, 인센티브사업, 남북부권 선도사업, 균특사업

7) 충북연구원(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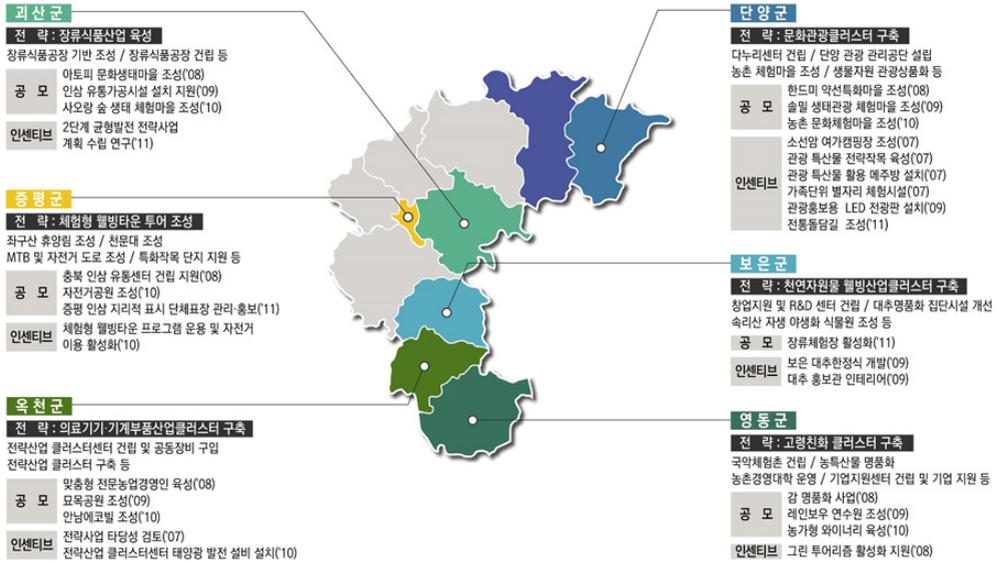
- 전략사업 :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신규사업
 - 공모사업 : 지역발전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사업, 순위에 따라 그룹별 차등지원
 - 협약사업 : 보은산업단지조성사업(기반시설비 등)
 - 행복마을사업 : 주민들의 참여·협동으로 공동체 회복, 살기 좋은 마을 조성
 - 인센티브사업 : 전략·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상위 3~4개 지역 차등지원
 - 균특사업 : 균형발전특별회계 추진사업
- 재원 :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균특 생활기반계정의 5% 이상
 - 지원방식 : 지역발전도에 따라 도비지원 비율 차등화
 - A그룹(괴산, 영동) : 도비 70%, 시·군비 30%
 - B그룹(보은, 옥천) : 도비 65%, 시·군비 35%
 - C그룹(단양, 증평) : 도비 60%, 시·군비 40%
 - D그룹(제천) : 도비 55%, 시·군비 45%

표 3-2 | 충북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12~2016)

구분	내용		
지원대상	저발전 7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총 사업비	2,550억 원	전략사업	1,457억 원(도비 890, 시·군비 510, 기타 57)
		공모사업	233억 원(도비 112, 군비 115, 기타 6)
		협약사업	90억 원(전액 도비)
		행복마을사업	13억 원(도비 9, 시·군비 4)
		인센티브사업	41억 원(도비 35, 시·군비 6)
		남북부권 선도사업	6억 원(전액 도비)
		균특사업	710억 원(균특 372, 도비 120, 군비 218)

자료 : 충북연구원(2022), 「충청북도 균형발전정책 15년사(초안)」

그림 3-6 | 충북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12~2016)



자료: 충북연구원(2022), 「충청북도 균형발전정책 15년사(초안)」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17~2021)⁸⁾

-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 총사업비 : 3,930억 원(균특 297, 도비 1,591, 시·군비 2,042)
- 대상지역 : 발전도가 현저히 낮은 7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 추진사업 :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공모사업, 인센티브사업, 행복마을사업, 균특사업
 - 전략사업 :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신규사업, 도의 전략산업, 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신성장산업
 - 기반조성사업 : 정주여건 개선 등 사회기반시설 신설·개량사업, SOC 위주의 지역 기반 강화사업

8) 충북연구원(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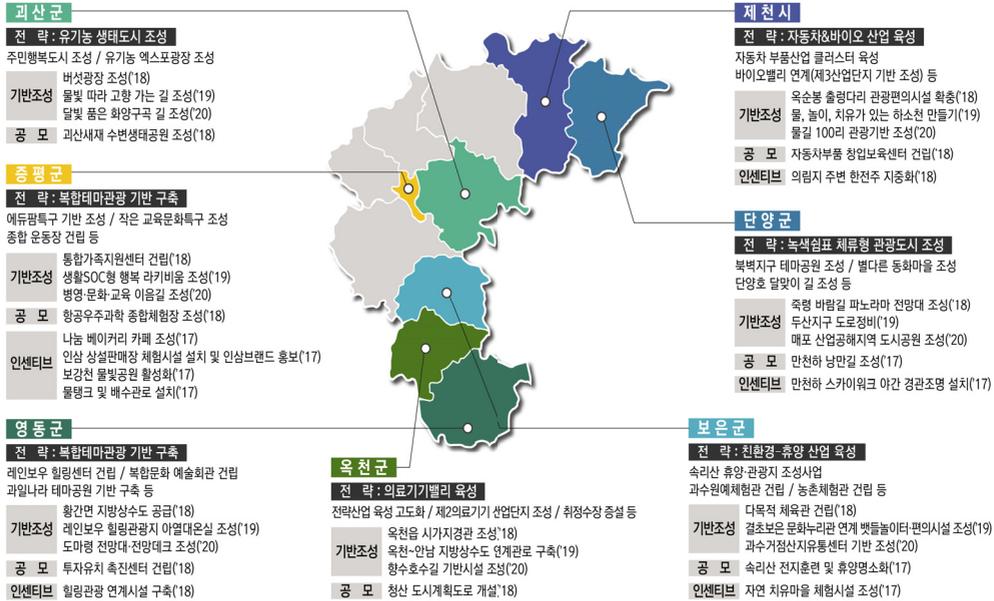
- 공모사업 : 지역발전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사업, 순위에 따라 그룹별 차등지원
 - 인센티브사업 : 전략·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상위 3~4개 지역 차등지원
 - 행복마을사업 : 주민들의 참여·협동으로 공동체 회복, 살기 좋은 마을 조성
 - 균특사업 : 균형발전특별회계 추진사업
- 재원 :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균특 생활기반계정의 5% 이상
 - 지원방식 : 지역발전도에 따라 도비지원 비율 차등화
 - A그룹(단양, 괴산) : 도비 65%, 시·군비 35%
 - B그룹(보은, 영동) : 도비 60%, 시·군비 40%
 - C그룹(옥천, 제천) : 도비 55%, 시·군비 45%
 - D그룹(증평) : 도비 45%, 시·군비 55%

표 3-3 | 충북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17~2021)

구분	내용		
지원대상	저발전 7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총 사업비	3,930억 원	전략사업	1,771억 원(도비 931, 시·군비 840)
		기반조성사업	1,275억 원(도비 425, 시·군비 850)
		공모사업	123억 원(도비 40, 시·군비 83)
		인센티브사업	58억 원(도비 36, 시·군비 22)
		행복마을사업	30억 원(도비 22, 시·군비 8)
		균특사업	673억 원(균특 297, 도비 137, 군비 239)

자료 : 충북연구원(2022), 「충청북도 균형발전정책 15년사(초안)」

그림 3-7 | 충북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17~2021)



자료 : 충북연구원(2022), 「충청북도 균형발전정책 15년사(초안)」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22~2026)⁹⁾

- 사업기간 : 2022~2026(5년간)
- 총사업비 : 3,806억 원(도비 1,905, 시·군비 1,901)
- 대상지역 : 발전도가 현저히 낮은 7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 추진사업 :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행복마을사업 등
 - 전략사업 :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신규사업, 지역자원 활용 경제활성화 및 소득증대사업,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국가 종합계획 연계 국비 확보 마중물 사업, 인구감소 대응 사업 등

9) 충북연구원(2022)

- 미래신성장동력사업(신규) :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 측면에서 미래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기반 구축사업, 지역산업 분야, 국가계획 연계 핵심 투자사업 등 미래신성장동력 사업 집중 투자,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관련사업 집적 등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마중물사업 발굴
 - *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강호축 개발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지역산업 분야 및 국가계획 연계 핵심 투자사업 등 관련사업 집중 투자
- 기반조성사업 :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구축사업, 지역 자원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가능 사업, 지역 주민 생활안전 및 기후 변화 대응에 필요한 사업, 산업지원시설 등 지역 산업기반 강화사업, 국비 확보 등이 어려우나 시급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 행복마을사업 : 주민들의 참여·협동으로 공동체 회복, 살기 좋은 마을 조성

표 3-4 | 충북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22~2026)에서 사업분야별 주요내용

구분	해당 시군	사업분야별 주요내용
전략사업	7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핵심사업과 연계가능사업 :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산업단지 조성 등 • 국가 및 도 종합계획과 연계 국비 확보를 위한 마중물 사업 • 지역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지원 가능 사업 • 지역자산 및 자원 활용 가능 사업 • 지역인재 육성사업(혁신역량강화사업) 등
미래신성장동력사업	7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기반 구축사업 • 강호축 개발,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국가계획 연계(도-시·군)사업 등
기반조성사업	7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반시설(기초 인프라) 구축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 자연·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 및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 지역주민 생활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 산업지원시설 등 지역 산업기반 강화 등

자료 : 충북연구원(2022), 「충청북도 균형발전정책 15년사(초안)」

- 재원 :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군특 생활기반계정의 5% 이상
- 지원방식 : 지역발전도에 따라 도비지원 비율 차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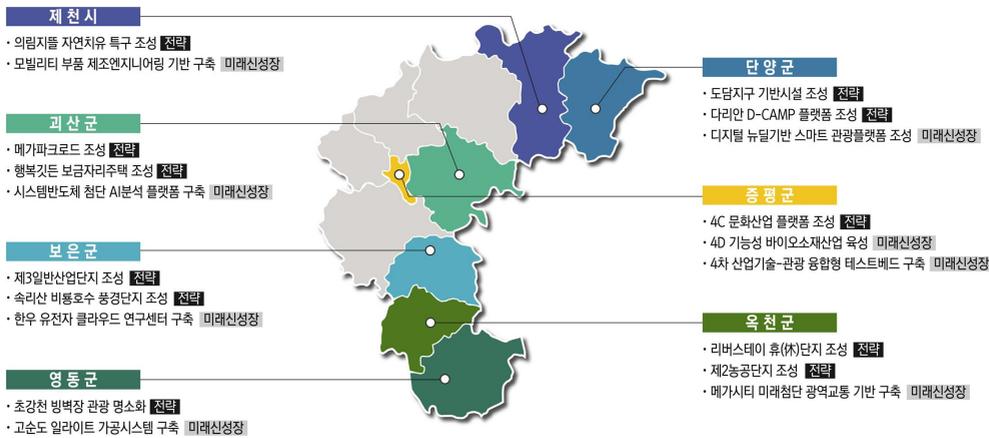
- A그룹(괴산, 단양) : 도비 60%, 시·군비 40%
- B그룹(영동, 보은) : 도비 55%, 시·군비 45%
- C그룹(옥천, 제천) : 도비 50%, 시·군비 50%
- D그룹(증평) : 도비 40%, 시·군비 60%

표 3-5 | 충북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22~2026)

구분	내용		
지원대상	저발전 7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총사업비	3,806억 원	전략사업	1,820억 원(도비 962, 시·군비 858)
		미래신성장동력사업	560억 원(도비 296, 시·군비 264)
		기타사업 (기반조성, 행복마을 등)	1,426억 원(도비 647, 시·군비 779)

자료 : 충북연구원(2022), 「충청북도 균형발전정책 15년사(초안)」

그림 3-8 | 충북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22~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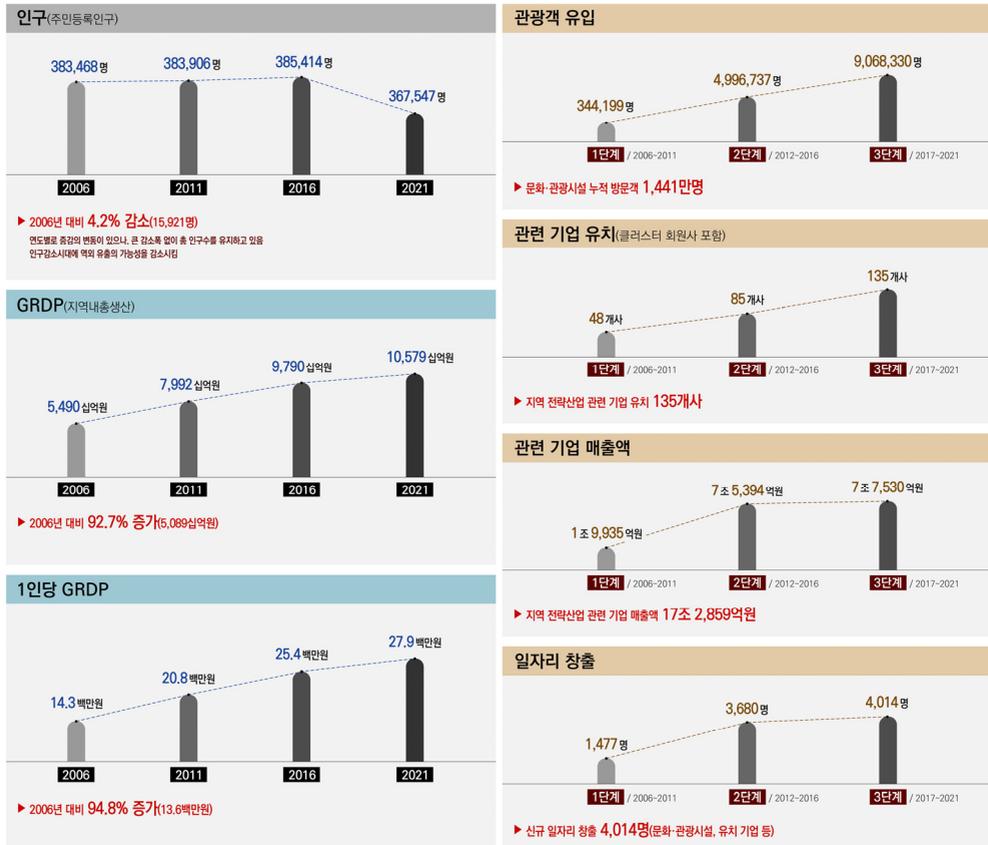


자료 : 충북연구원(2022), 「충청북도 균형발전정책 15년사(초안)」

- 충청북도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으로 인구 및 지역경제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나가고 있음

- 공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인구의 증가를 대표하는 지표인 '주민등록인구', 경제 활성화를 대표하는 지표인 'GRDP, 1인당 GRDP'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뤄진 '시설 관광객, 기업유치 및 매출액, 일자리 창출' 등 시·군 내부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의 성과 여부를 살펴봄
- 사업 전(2006년)과 1단계 사업 종료(2011년) 시점, 2단계 사업 종료(2016년) 시점, 3단계 사업 종료(2019~2021년) 시점 등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시계열적 성과를 분석함 (충북연구원)
- 인구의 경우, 2006년 383,468명에서 2021년 367,547명으로 총 15,921명(4.2%)의 인구가 감소
 - 사회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저발전지역이 인구소멸 예상지역으로 우려를 받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큰 감소폭을 보인 것은 아니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인구 유출의 가능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GRDP(지역 내 총생산)의 경우, 2006년 5,490십억 원에서 2021년 10,579십억 원으로 총 5,089십억 원(92.7%)이 증가함
 - 1인당 GRDP의 경우, 2006년 14,3백만 원에서 2021년 27.9백만 원으로 총 13.6백만 원(94.8%)이 증가해 GRDP(지역 내 총생산) 분석 결과와 비슷한 추이를 보임
- 2020년 12월 기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총 135개사(클러스터 회원사 포함)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함
 -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관련 기업의 매출액은 총 17조 2,859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
 -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조성된 문화·관광시설에 총 14,409,266명의 관광객이 방문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활동 유발효과를 창출함
 -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조성된 문화·관광시설 및 유치 기업들은 총 4,01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경제활동 유발효과를 창출함

그림 3-9 | 충북 지역균형발전 정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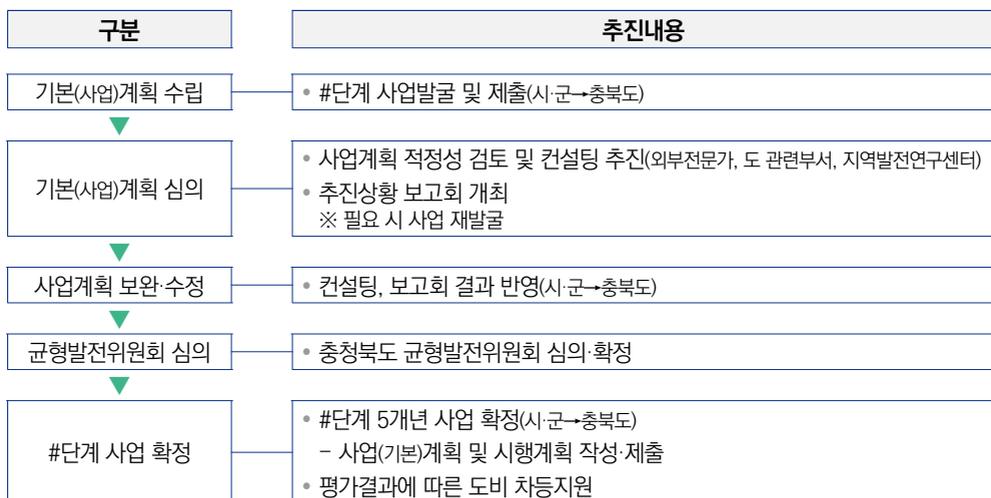
자료 : 충북연구원(2022), 「충청북도 균형발전정책 15년사(초안)」

추진체계

- 충북도는 2007년 1월에 도에 균형발전본부를 설치하고, 2007년 4월에는 본격적으로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도내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심층적인 연구 및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충북연구원 내에 연구전담팀인 ‘지역발전연구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충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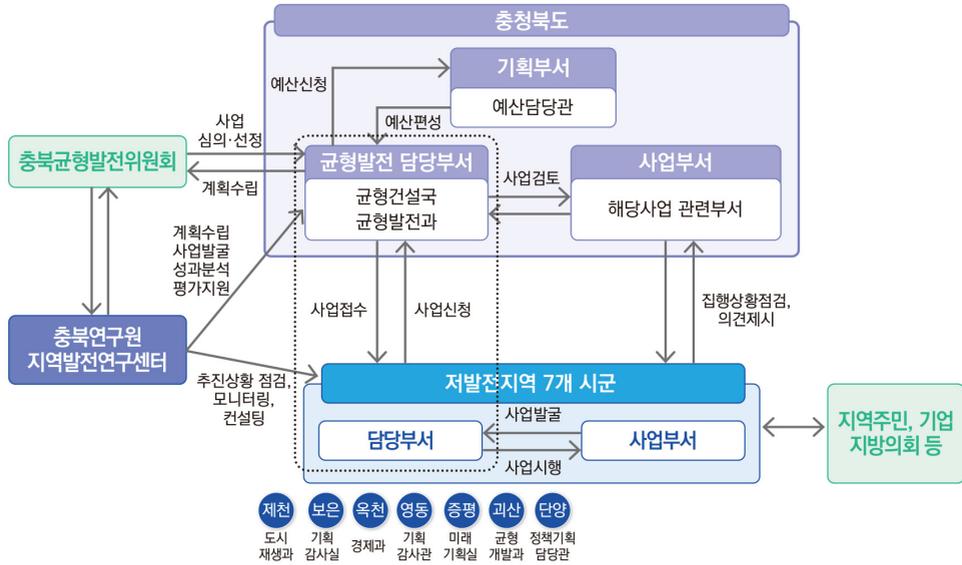
- 2008년 1월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로 운영재원을 확보
 - 충북도는 新지역발전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도 전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군별 특화발전사업 선정 등의 계획내용을 발표하였음
 - * 열악한 도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 없이 순도비 지원을 통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체계를 확립하였고, 특별회계 운영으로 지속적인 재정확보가 가능해져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박진경·이제연, 2018)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균형건설국 산하 균형발전과에서 총괄하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평가 및 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관리함
 - 도 사업부서에서는 시·군 사업계획과 도정정책과의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 국비 사업 우선추진 가능여부 등 협의를 진행
 - 저발전 7개 지역 시·군에 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으며, 시·군 사업부서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실제 시행하고 집행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 * 제천시는 도시재생과, 보은군은 기획감사실, 옥천군은 경제과, 영동군은 기획감사관, 증평군은 미래기획실, 괴산군은 균형개발과, 단양군은 정책기획담당관이 담당부서로 지정되어 있음

그림 3-10 |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절차



자료 : 충청북도(2022),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종합운영지침」

그림 3-11 |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



자료 : 박진경·이제연(2018)을 토대로 재작성

사업평가체계

- 충청북도는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먼저 사업선정단계에서 도 사업발굴 지침에 의거하여 시군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전문가 자문회의와 추진상황 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컨설팅을 거쳐 계획을 수정하고, 도 균형발전 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의·확정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음
 -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연도별 성과지표 목표(계획)치를 설정하고, 사업별 세부내용과 사업추진(지원)체계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함
 - * 사업별 세부내용 : 개요, 주요 사업내용, 차년도 세부 추진계획, 예산 집행계획, 향후계획, 기대 효과 등
- 사업운영 및 관리단계에서 충북도는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와 합동으로 모니터링 TF팀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사업추진의 모니터링·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연차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한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
 - 전문가 구성을 통한 연차평가로 정책기조 등에 대응한 사업추진 세부방안 제안 및 향후 연계전략 모색 등 컨설팅 병행 추진
 -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 지역이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회 마련
 - * 사업평가를 추진하는 대상은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전략사업과 미래신성장동력사업에 한정
- 사업평가단계에서는 매년 추진하는 연차평가와 5년차에 추진하는 최종평가로 구분
 - 연차평가 시행 후 사업성과가 부진하면 해당 시군에 익년도 사업비를 감액배정하는 등 패널티 부여
 - 5년차 최종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 * 현재 3단계 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1위 12억, 2위 10억, 3위 8억, 4위 7억 인센티브 차등 지급
 - * 시군은 현안사업 위주로 대상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 가능
- 현재 평가 및 사후관리는 컨설팅 시스템을 개편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음
 - 매년 기 추진되었던 컨설팅을 사업추진상황에 따른 시·군 자문 및 평가로 확대 함으로써 계획기간 내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연차별 실행계획 대비 미진한 시·군은 패널티 부여

표 3-6 |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전략사업) 평가시스템

구분	현행	변경
연차평가 (매년)	전문가 컨설팅 (사업추진상황 자문)	연차평가 (사업성과 부진 시군 익년도 사업비 감액배정 등 패널티)
최종평가 (5년차)	최종평가 (인센티브 차등지급)	최종평가 (인센티브 차등 지급)

자료 : 충청북도(2022),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종합운영지침」

- 연차평가는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차별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추진내용을 대상으로 충청북도에서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로 위탁하여 정성·정량평가 실시
 - 지자체(시·군)는 지역발전연구센터의 연차평가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보고서 작성 후, 도를 경유하여 지역발전연구센터에 제출
 - 지역발전연구센터는 평가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시·군) 사업추진보고서 확인 및 그에 따른 자문, 평가결과를 충청도에 제출
 - * 정성평가(대면방식) : 사업추진보고서를 근거로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확인
 - * 정량평가(서면방식) : 사업추진보고서를 근거로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확인

- 최종평가는 5차년도 10월에 실시하며, 단계별(5개년)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추진내용을 대상으로 정성·정량평가 실시하는데, 충청북도에서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로 위탁하여 정성평가, 정량평가 등 실시
 - 지자체(시·군)는 지역발전연구센터의 최종평가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보고서 작성 후, 도를 경유하여 지역발전연구센터에 제출
 - 지역발전연구센터는 평가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시·군) 사업추진보고서 확인 및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충청도에 제출
 - * 정성평가(대면방식) : 사업추진보고서를 근거로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확인
 - * 정량평가(서면방식) : 사업추진보고서를 근거로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확인

-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단계별, 시·군별 전략사업 추진 성과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를 도출하여 최종적인 성과를 분석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인한 저발전 7개 시·군의 실질적 성과를 분석

- 통계연보 발간 시기 및 시·군별 내부자료 수합일정을 고려하여 연 1회(하반기) 분석 추진
 - 분석대상으로 충청도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저발전 7개 시·군(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이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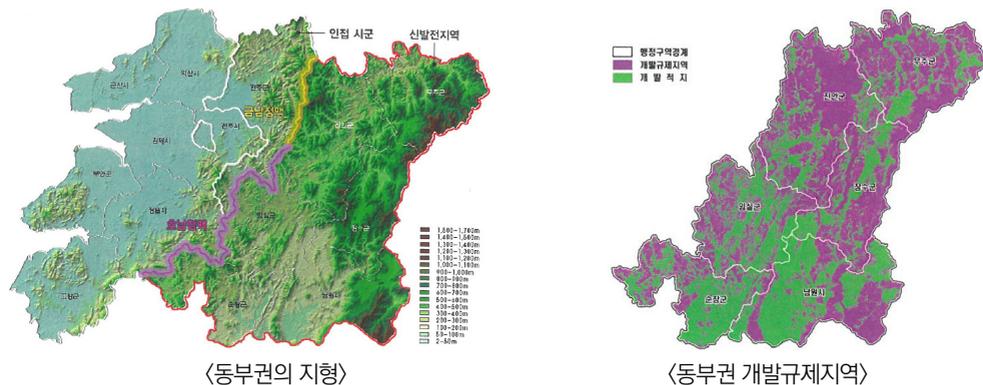
- 사업의 성과지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목적 및 성격에 부합하면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표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고, 충북도와 지자체의 입장을 검토하여 선정
 - 시·군별 3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충북도(균형발전과)와 협의 후 최종 선정
 -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각 지역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

2. 전북 동부권사업 평가체계

정책추진배경 및 목적

- 6개 시, 8개 군의 14개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진 전라북도도는 전주를 비롯한 서부권에 인구와 새만금 등 대형 국책사업이 집중되어 동부 내륙권에 위치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개발축에서 소외되어 지역 불균형 발생
 - 동부내륙에 위치해 있는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의 6개 시·군은 산악지역인데다 각종 자연환경 보전에 관련된 규제로 개발용지가 부족해서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축에서 소외되어 왔음(박진경·이제연, 2018)
 -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과 개발억제지역을 제외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면적은 동부권 토지면적의 34.6%에 불과

그림 3-12 | 전북 동부권의 지형과 개발규제지역



출처 : 전라북도(2011),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안)」

- 전주가 위치해 있는 서부권에 비해서 동부권의 6개 시군은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경제산업환경이나 사회문화적 환경, 교통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발전되어 지역 간 격차가 심화
 - 이에 민선 4기에 들어서면서 전라북도는 2006년 5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자체 지역 균형발전조례인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전라북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부권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부권 지역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전라북도 동부권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동부권 지역혁신사업기반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도로교통망 개선, 정주기반 확충, 농림소득기반 조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6개 부문 64개 사업으로 시작되었음(박진경·이제연, 2018)
 - 2006년 10월에는 동부권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도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군들이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소규모 단위사업 들로 추진을 하다 보니 일부 민간투자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법적인 사업 이행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¹⁰⁾
 - 이에 전북도는 2009년 12월에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
 - 동부권의 비전은 '식품·관광 중심의 녹색성장 거점(Green Growth Gut)'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휴양·레저·체험형 관광도시 조성 and 지연사업의 신성장 녹색산업화를 목표로 정하였으며, 시군별 특화전략 하에서 식품·관광분야 신규사업 24개 사업을 확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전북도는 도 차원에서 동부권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남과 충북을 벤치마킹하여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음

10) 박진경·이제연(2018)

- 전북도는 2010년 12월에 전북 실정에 맞는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조례 및 규칙을 함께 개정하였음

정책대상 및 선정기준

- 전라북도의 경우 충청북도와는 달리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의 6개 지역으로 대상지역을 고정하고 있음
 - 전라북도 내 지역균형발전은 동부권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전라북도 동부권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 동부권 발전사업은 식품과 관광 등 동부권의 특화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한

그림 3-13 | 전북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정책대상인 동부권지역



자료 : 박진경·이제연(2018),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적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동부권사업 추진현황

- 2011년부터 시작된 동부권사업은 식품과 관광분야에 선택·집중하여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2012년에 제1차 동부권 발전계획(2010~2016)을 수립하였고, 2017년에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2017~2025)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 2020년 현재 전북의 동부권사업은 4개 분야, 1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24개 사업에 총사업비 2,187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음

표 3-7 | 전북 동부권사업(2011~2020)

시군	식품 분야(8개 사업)		관광 분야(26개 사업)	
	1단계 ('11~'14)	2단계 ('15~'20)	1단계 (완료)	2단계 (진행 중)
남원	허브클러스터(계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한루원주변 관광타운('11~'14) • 본정통재현사업('15) • 7080 스페이스 조성('1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한루원주변 관광타운('15~'20) (예촌길, 7080스페이스)
진안	홍삼클러스터(계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산 산약초타운 조성('11) • 마이산 로하스레저타운('12~'14) • 마이산 북부관광타운('1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산 북부개발('14~'16) •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16~'20)
무주	천마클러스터(계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레포츠타운('11~'13) • 반딧골 산림체험숙박('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17~'19) • 태권도 주변관광 활성화('17~'19)
장수	오미자 클러스터	장수식품 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암공원 테마숲('11) • 말산업 클러스터('12~'13) • 호스팜랜드조성('1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니랜드 조성('16~'17) • 장수가야유적정비사업('18~'20)
임실	치즈클러스터(계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선대관광지('11) • 치즈 팜투어벨트('1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진강 에코뮤지엄('15~'20)
순창	장류 클러스터	건강장수식품 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진강관광자원개발('11, '14) • 강천산관광벨리('12~'13,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천산 야간 명소화('17~'18) • 수체험센터 건립('16~'18) • 설랜드관광휴양촌('17~'19)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를 활용한 박진경·이제연(2018)

표 3-8 | 전북 동부권사업(2021~2025)

시군	분야	유형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 원)
합계	4개	12개	24개 사업		218,685
남원 (7)	포스트코로나19식품	유통마케팅	추어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21~'25	5,000
	지역특화	기반조성	오리정·버선발 연계 관광지화	'21~'25	7,000
	지역특화	기반조성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21~'25	8,000
	지역특화	기반조성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	'21~'25	8,000
	지역특화	스마트농촌관광	지리산 허브밸리고도화	'21~'25	6,000
	문화향유	역사유적박물관	기문(己汶) 가야 홍보관 건립사업	'21~'23	4,500
	문화향유	미술교육관	남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	'21~'22	3,000
진안 (4)	포스트코로나19식품	면역강화	홍삼한방 클러스터 고도화	'21~'25	13,950
	지역특화	기반조성	운일암반일암 관광단지 활성화	'21~'24	7,000
	지역특화	생태관광	용담호변 관광자원화	'21	1,000
	체류형ICT	체류형ICT (식품&관광)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21~'25	13,250
무주 (4)	포스트코로나19식품	면역강화	천마플러스 식품클러스터	'21~'25	8,975
	지역특화	기반조성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20~'24 (20년 사업비)	15,100 (4,400)
	지역특화	기반조성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20~'24 (20년 사업비)	13,800 (2,600)
	지역특화	경관관광	무주 남대천주변 경관조성	'21~'25	19,400
장수 (3)	포스트코로나19식품	스마트물류	장수 레드푸드융복합 클러스터	'21~'25	5,800
	문화향유	역사유적박물관	반파국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21~'25	15,250
	체류형ICT	체류형ICT (식품&관광)	장수 누리파크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21~'25	5,900
임실 (2)	포스트코로나19식품	유통마케팅	제3기 치즈식품 클러스터 육성	'21~'25	17,200
	지역특화	산악체험관광	요산공원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21	5,000
순창 (4)	포스트코로나19식품	미생물	발효미생물산업 클러스터 고도화	'21~'25	12,700
	포스트코로나19식품	미생물	발효·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육성	'20~'23 (20년 사업비)	10,400 (2,600)
	지역특화	기반조성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	'20~'22 (20년 사업비)	3,000 (1,500)
	체류형ICT	체류형ICT (식품&관광)	순창 休-메디푸드클러스터 산업	'21~'25	9,460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22)

- 전라북도의 경우 전북도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으나, 2016년 제1차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 시군별 특화된 선도식품클러스터¹¹⁾ 조성사업을 통해서 생산·유통·가공시설 등 기반시설 105개소가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음¹²⁾
 -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홍삼클러스터 등 8개 사업에 1,82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특히 51건, 상표등록 출원 및 등록 21건, 지리적 표시 지정·등록 등 78건의 지적재산을 확보
 - 관광분야에서는 남원 광한루, 진안 마이산, 순창 강천산, 장수 말산업 등 대표 관광지가 개발되었으며, 관광지 기능보강 및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레저·숙박·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여 마이산 39%, 강천산 25%의 관광객 증가와 함께 임실 치즈 팜랜드 체험자, 장수 한우랑·사과랑 등의 축제 관광객 증가 효과 창출

표 3-9 | 전북 동부권사업의 식품분야 지원성과

구분	계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비고	
재배면적 (ha)	'10년	6,419	100	1,003	23	170	4,093	1,030	임실 젓소 사육두수
	'15년	7,138	37	840	60	235	4,116	1,850	
기업유치 (개소)	'10년	12	1	6	5	-	-	-	
	'15년	70	7	18	9	5	8	23	
매출액 (억 원)	'10년	857	50	275	62	2	138	330	
	'15년	1,599	450	400	83	8	204	454	
일자리창출 (명)	'10년	317	103	60	40	8	60	46	
	'15년	991	277	300	82	25	110	197	
제품개발 (건)	'10년	3	1	1	-	-	-	1	
	'15년	104	15	12	14	7	51	5	
체험관광객 (천 명)	'10년	1,507	200	760	2	100	145	300	
	'15년	2,977	450	780	8	320	159	1,260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6)를 활용한 박진경·이제연(2018) 참조

11) 남원 허브,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장수 오미자와 건강장수식품, 임실 치즈, 순창 장류와 장수식품

12) 박진경·이제연(2018)

표 3-10 | 전북 동부권사업의 관광분야 지원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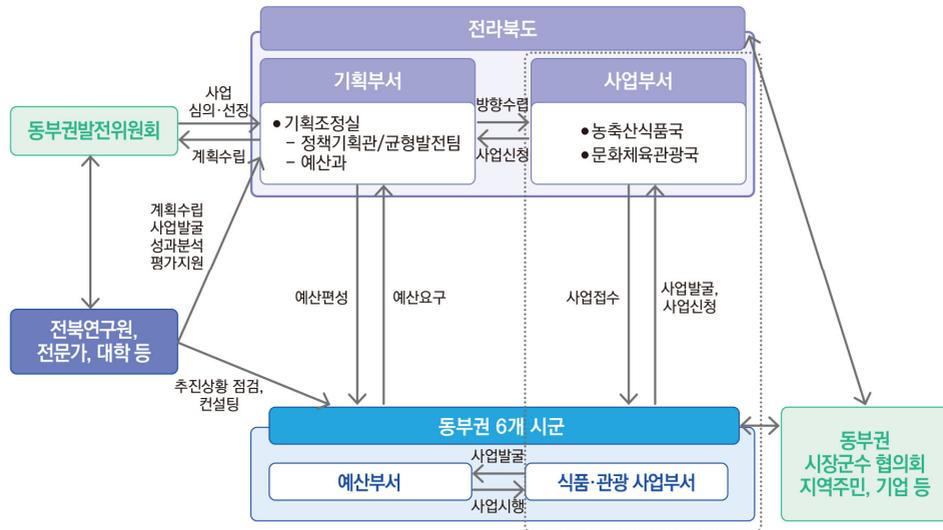
시군	하드웨어 구축	관광객(이용자) 증가	비고
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동한옥체험관 개관('16.7.15) 숙박동(7동), 다목적관, 정자 등 * ㈜이랜드파크 위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관(7.15~8.24) 후 이용자 현황 * 1,699명, 104,620천 원 광한루원 관광객 증가 * '10년(1,064천 명) → '16년(1,440천 명) 	광한루 연계
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약초타운 공원 조성 - 산약초타운(A=147,633㎡), 구절초 군락지(6ha), 탐방로 등 로하스레저타운 조성 - 북부주차장, 사양제생태공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산 관광객 증가 * '10년(796천 명) → '16년(1,017천 명) 	홍삼스파, 마이산 연계
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강종합 레포츠타운 조성 - 대소공원, 굴암리공원, 조형물 설치, 캠핑길 조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대회(래프팅, 카약) 개최 래프팅 관광 이용자 증가 * '10년(20천 명) → '15년(35천 명) 	금강 연계
장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 - 말 크로스컨트리 명품길, 승마 레저체험촌 (전망대, 말조각공원, 체험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마시설 관광객 증가 * '11년(7,750명) → '15년(26,474명) 	말클러스터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암공원 테마숲 조성 - 수변데크, LED조명 경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우랑 사과랑 축제 관광객 증가 * '11년(231천 명) → '15년(318천 명) 	대표축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선대 청소년 수련관 - 숙박동(48객실, 360명 수용), 급식동(160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관 이용자 증가 * '13년(21천 명) → '15년(41천 명) 	사선대
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즈 팜투어벨트 조성 - 치즈레스토랑, 발효숙성실 등 - 필봉굿마을 조성, 다목적광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즈팜랜드 체험자 * '10년(14만 명) → '16년(15.5만 명) 농약전수관 이용자 * '11년(29,500명) → '15년(47,457명) 	치즈관광
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진강 향가 관광자원 개발 - 오토캠핑장(37면), 방갈로(9동), 쉼터 등 강천산 관광벨리 - 탐방로(L=4.8km), 삼림욕장(3개소), 쉼터, 산책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가 오토캠핑장 이용('05.7~) * 이용(18천 명), 사용수익(156백만 원) 강천관 관광객 * '10년(1,060천 명) → '16년(1,328천 명) 	섬진강 강천산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6)를 활용한 박진경·이제연(2018) 참조

추진체계

- 전북도는 2006년 5월에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전라북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부권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
 - 2010년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재원 확보

그림 3-14 | 전북 동부권사업 추진체계



자료 : 박진경·이제연(2018)을 토대로 재작성

- 동부권사업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산하 균형발전팀에서 총괄하며, 균형발전과에서 동부권 발전사업 발전방향 수립·평가 및 동부권 특별회계 운영·관리하고 있음
 - 전북의 동부권 발전사업은 식품 및 관광분야에 특화되어 있어 사업부서인 농축산 식품국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6개 시군의 식품 및 관광분야 사업부서와 협의 하에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함
 - 시군의 식품 및 관광분야 사업부서에서는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도 사업부서에 사업을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

- 도지사 소속의 동부권발전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과에서 상정한 동부권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발전사업 선정, 동부권 주요시책과 재원분담에 대한 조정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함
 - 동부권발전위원회는 동부권 발전 조례 제8조에 의거 동부권 발전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동부권 주요시책 및 재원분담 등 조정에 관한 사항, 동부권 발전사업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선정·심의(박진경·이제연, 2018)
- 전라북도는 충청북도와 같이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 전북도에서 총괄하여 계획수립과 사업평가를 추진하고 있음
 - 전북연구원에서 동부권 발전사업 발굴, 평가 및 컨설팅과 관련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및 효과성을 진단

사업평가체계

- 전라북도는 6개 시군에 동부권 특별회계 예산을 연간 50억 원씩 정액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부터 시군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용해오고 있음(박진경·이제연, 2018)
 - 집행률 저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동부권 발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컨설팅단 운영
 - 동부권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와 시군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현지를 점검하고 간담회 개최
- 전북도는 동부권사업의 운영 효율화 및 성과창출을 위하여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동부권 사업의 경우 식품·관광분야의 두 분야별로 평가체계를 별도로 만들고 서면평가, 현장실사, 담당자 인터뷰를 함께 실시하여 평가하였음
 - * 평가항목은 사업 기획성, 집행 효율성, 운영 기능성의 3개 항목, 12개 지표로 구성(박진경·이제연, 2018)

* 6개 시군을 4단계로 분류하고 1개 시군에는 2.5억 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2개 시군에는 각각 1억 원과 1.5억 원의 패널티를 부여(박진경·이제연, 2018)

- 2022년 현재 전북도는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사업분야별로 분리·적용하였던 평가적용 기준을 통합일원화 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있음(전북 내부자료, 2022)

- 사업성과지표(50), 내부행정관리지표(20), 외부(만족도)평가(30), 평가개선도(3)로 평가

* 평가대상은 6개 시군의 4개 분야, 12개 유형, 총 24개 동부권사업임

표 3-11 | 전북 동부권사업 평가시스템

구분	세부지표	비고
사업성과지표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지표(25) • 자율지표(25) • 사업추진 모니터링(분기별) 	자율지표는 시군이 선정하고, 핵심지표와 자율지표는 전문가 평가로 시행
내부행정관리지표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의 충실도(신규 14점, 계속 4점) • 예산편성 및 절감, 사업집행 및 관리(신규 3점, 계속 14점) • 기관장의 관심도, 평가환류 등(신규 2점, 계속 2점) 	정량평가 및 전문가 정성평가 시행
외부(만족도)평가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평가개선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총점 5점 이상 증가: 3점 • 전년대비 총점 3점 이상 증가: 1점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22)

- 사업성과지표(50)는 핵심지표(25)와 자율지표(25), 사업추진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총 50점을 부여함

- 시군별로 맞춤 핵심지표와 자율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고, 동부권사업을 통하여 지향하는 최종목표를 핵심지표로 도출하여 동부권발전사업의 가시적 성과 측정

* 핵심지표는 동부권사업이 식품 및 관광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매출액, 관광객수, 또는 시설 건립 등으로 측정하며, 전문가 평가에 의해 점수를 부여함

* 시군이 설정하는 사업별 자율지표는 주로 주민의견수렴 횟수, 사업현상실사 횟수, 행정절차 이행여부, 민원해결 여부,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시행여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여부, 홍보, 박람회 참가횟수 등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시군별 1:1 전문가 배정을 통한 컨설팅 지속 실시 및 피드백을 통하여 시군별 사업 상황에 적합한 핵심지표와 자율지표 개발, 평가결과 수용성 제고 기대

- 내부행정 관리지표(20)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 시 가시적 성과 도출
 - 사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사업과정까지 관리함으로써 효율적 사업추진 가능, 사업수행자에 사업추진 책임있는 사업관리 책임부여, 평가시기 부담완화
- 외부평가(30)는 만족도 지표를 개발하여 핵심 성과지표와 연동하여, 단년이 아닌 다년에 대한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측정과 이에 따른 성과달성 여부를 확보하도록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직접적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 및 사업의 최종 수혜자의 평가참여로 평가결과의 수용성·신뢰성 제고
- 추가로 매년 평가 진행에 따라 기존 인프라 부족 등으로 평가 결과가 하위권인 시군이 지속적으로 패널티를 부여받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환경이 열악한 시군도 사업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의지를 잃지 않도록 평가개선도(3) 항목을 추가하여 가점제를 시행함
 - 전년 대비 총점이 5점 이상 증가하면 가점 3점을 부여하고, 전년대비 총점이 3점 이상 증가하면 1점을 부여함

표 3-12 | 전북 동부권사업 평가체계의 핵심지표

시군	분야	유형	사업명	핵심지표
합계	4개	12개	24개 사업	24개
남원 (7)	포스트코로나19 식품	유통마케팅	추어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참여기업 매출액 증대
	지역특화	기반조성	오리정·버선발 연계 관광지화	도심권 연계 관광지 조성을 위한 오리정·버선발 연계 관광지화 사업 추진
	지역특화	기반조성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도심권 관광객 유치에 위한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지역특화	기반조성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	지리산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
	지역특화	스마트농촌관광	지리산 허브밸리고도화	감성적 관광지 조성을 위한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
	문화향유	역사유적박물관	기문(己汶) 가야 홍보관 건립사업	기문가야 홍보관 건립사업 추진
	문화향유	미술교육관	남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	시민들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남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

시군	분야	유형	사업명	핵심지표
진안 (4)	포스트코로나19 식품	면역강화	홍삼한방 클러스터 고도화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 육성을 통한 매출기여
	지역특화	기반조성	운일암반일암 관광단지 활성화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개발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명소화 도모
	지역특화	생태관광	용담호변 관광자원화	용담호변 경관개선을 통한 생태관광 경쟁력 제고
	체류형ICT	체류형ICT (식품&관광)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무주 (4)	포스트코로나19 식품	면역강화	천마플러스 식품클러스터	천마 가공 신제품 매출액 증대
	지역특화	기반조성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관광객유치를 위한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추진
	지역특화	기반조성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지역특화	경관관광	무주 남대천주변 경관조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추진
장수 (3)	포스트코로나19 식품	스마트물류	장수 레드푸드융복합 클러스터	참여기업 매출액 증대
	문화향유	역사유적박물관	반파국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장수군 가야유적 국가사적 및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
	체류형ICT	체류형ICT (식품&관광)	장수 누리파크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장수누리파크 관광객 유치 증가
임실 (2)	포스트코로나19 식품	유통마케팅	제3기 치즈식품 클러스터 육성	참여기업 매출액 달성도
	지역특화	산악체험관광	요산공원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요산공원 주변 관광자원화 추진
순창 (4)	포스트코로나19 식품	미생물	발효미생물산업 클러스터 고도화	발효미생물산업 기술혁신강화사업 (종균첨가제의 개발 및 상품화)
	포스트코로나19 식품	미생물	발효·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발효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육성
	지역특화	기반조성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
	체류형ICT	체류형ICT (식품&관광)	순창 休-메디푸드클러스터 산업	休-메디푸드클러스터 매출액 증대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22)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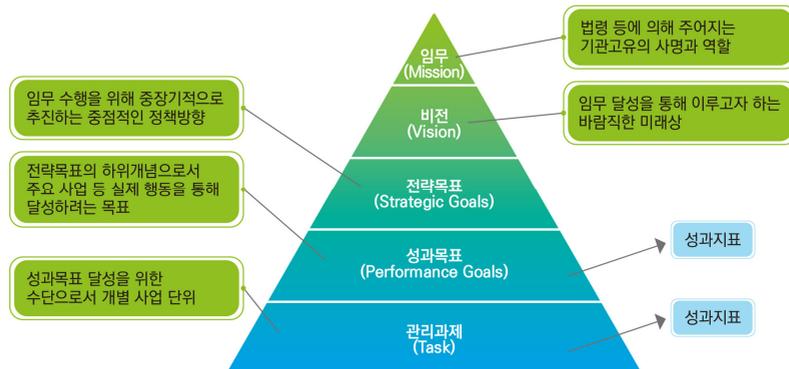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1. 기본방향

성과관리와 성과지표

- 성과는 계획되었던 성취에 대한 실제적 성취로 정의(Anderson et al., 2016)되며, 성과 분석은 추진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이나 업무의 당위성, 효과, 목표 달성도, 관리 효율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함
 - 성과관리는 위계적으로 관리과제(Task), 성과목표(Performance Goals), 전략목표(Strategic Goals), 비전(Vission), 임무(Mission)로 구성(기획재정부, 2012)

그림 4-1 | 성과관리의 구성요소



자료 : 기획재정부(2012),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

- 성과평가 모델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으나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모델은 투입-산출-활동-결과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활용한 논리모형으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간의 관계를 기본 중심축으로 하면서 산출과 결과를 구분하여 살펴본다는 특징이 있음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 투입(input) : 프로그램을 위해 소비되는 자원, 즉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 사업운영을 위한 담당자, 예산, 물리적 시설 및 장비 등이 대표적임
 - 과정(process) :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투입 단계에서 소비되는 자원들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살펴봄. 과정은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혹은 사업이 전달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사업 내용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포함
 - 산출(output) : 프로그램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결과물을 의미
 - 결과(outcome) : 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변화나 성장 등과 같은 최종적인 결과물을 의미함
- *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의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는 사업의 산출로 인해 발생할 변화나 개선, 혜택과 같은 장기적 결과물을 의미함

표 4-1 | 논리모형에 따른 성과지표의 개념과 특성

단계 구분	개념	특성
투입(input)지표	사업추진에 투입된 자원과 인력, 기타의 자원을 나타내는 지표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
과정(process)지표	사업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점검하는 데 도움
산출(output)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결과 또는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이 의도한 1차적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점검하는 데 도움
결과(outcome)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

주 : 성과지표는 사업목적과의 연계정도에 따라서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로 구분
 자료 : 국무조정실(2006), 「성과지표 개발·관리 매뉴얼」
 기획재정부(2012),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

-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는 정책을 수행하였을 때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성과 목표의 달성도를 양적·질적으로 제시하는 지수(국무조정실, 2015)이며,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임(기획재정부, 2012)
 - 일반적으로 성과지표는 논리모형에 따라서 사업추진단계별로 투입-과정-산출-결과 지표로 구분되지만 사업목적과의 연계 정도에 따라서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로 구분(기획재정부, 2012)
 - 궁극적인 목적 달성 여부 측정을 위해서는 핵심 결과지표 위주로 선정하고, 관리하는 지표수가 너무 많지 않도록 해야 함
- 또한 성과지표는 정량적인 측정여부에 따라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할 수도 있음¹³⁾
 - 정량지표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측정결과가 주관적 견해에 의하여 변동되지 않아 결과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가 용이함
 - 정성지표의 경우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는 있으나, 정량지표만으로는 사업목표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이용

표 4-2 | 정량적인 측정여부에 따른 성과지표의 유형

구분	정량지표(계량지표)	정성지표(비계량지표)
정의	● 측정결과가 수치로 나타내어지는 지표	● 측정결과가 일반적 수치로 나타내어지지 않은 지표
특성	● 객관성 확보 가능 ● 성과측정의 결과가 주관적 견해에 의하여 변동되지 않음	● 평가자의 주관성 개입 가능 ● 대부분이 만족도 평가로 이루어짐(평가위원 평가, 만족도 평가와 체크리스트 평가 등은 고객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정성적 결과를 정량화 하는 것임)
대표적인 예시	● 증감률, 건수, 금액, 면적, 인원, 시간, 발생률, 달성률, 지수 등	● 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 평가위원 평가, 체크리스트 점수, 장기사업의 이행도에 관한 중간점검 확인 등

자료: 국무조정실(2015),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13) 국무조정실(2015)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정책목표 달성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과지표는 정책을 수행하였을 때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양적·질적으로 제시하는 지수(국무조정실, 2015)이며,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사업목적과의 연계 정도에 따라서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로 구분(기획재정부, 2012)
 - 충남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추구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핵심 결과지표 위주로 선정해야 함(기획재정부, 2012)
- 또한 바람직한 성과지표는 명확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원인성(Attributable), 신뢰성(Reliable), 적시성(Timely)을 갖추고 있어야 함¹⁴⁾
 - 성과지표는 명확(Specific)해야 하고, 측정가능(Measurable)해야 하며, 사업의 성과와 관련(Attributable)이 있어야 하고, 신뢰(Reliable)할 수 있어야 하며, 성과측정시기(Timely)와 맞아야 함
 - 따라서 성과지표는 궁극적인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지표수가 너무 많지 않도록 해야 함
-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2)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사업 실적평가 시 사업성과 및 정책목표 달성도 등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는 사업목적과의 연계 정도에 따라서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로 구분하고 있음
 - 성과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별 핵심성과지표 - 일반성과지표 체계를 사용하고 있음(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1)

*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시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차등화된 목표치를 일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역사업 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전년도에 설정된 핵심성과지표를 유지함(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1)

14) 기획재정부(2012)

합의에 의한 지표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사업 성과지표와도 연계 도모

-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하고, 성과관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핵심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나,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이 다르고, 사업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 할 수는 없음
 - 핵심성과지표와는 별도로 시·군별로 사업특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별 특성화지표를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유도하되, 이러한 특성화지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해당시군과 사전에 합의가 가능하도록 설계
 - 다만 사업추진 단계별로 성과지표를 투입-과정-산출-결과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특성화 지표를 개발하더라도 결과(outcome) 위주로 개발
 - 결과지표 중심의 핵심성과지표와 자율성과지표는 시행계획이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성과지표와 연계될 수 있어야 함
 - 또한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2)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평가 시 성과지표를 재정비 하여 성과관리체계의 내실화를 시도하고 있음
 -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되 결과지표 중심의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제시하며, 상위계획 등과 연계를 강화하는 성과관리체계 확립
 - 충남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역시 핵심지표와 시군별, 사업별 특성화 지표를 설정하되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사업 성과지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함
 - 국가균형발전사업의 경우 목표치 산출식 적용이 모호한 지표 대신에 명확한 지표로 대체하고 있으며, 포괄보조사업별로 핵심지표 측정산식 등을 제시(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1)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 가능
- *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지표는 공통지표(만족도)와 사업별 1개의 핵심지표, 그리고 포괄보조 사업별 자율지표를 1~2개씩 설정하고 있음(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1)

사업성과 제고를 유도하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성과관리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관리체계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 증대, 보다 투명한 행정의 필요성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 증가, 성과관리를 통해서 보다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은 사업으로 자원을 재배분해야 하는 필요성 증대(박진정·임태경, 2019)
-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과계획과 평가, 그리고 예산조정의 연계성을 최대한 높여 일괄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함
 - 성과목표를 설정한 후 성과목표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고, 자체평가나 종합평가 결과를 예산에 조정하여 반영하는 절차 추진
- 또한 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사업성과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쪽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사업추진단계별로 모니터링에 따른 개선사항이나 보완 사항을 충분히 작성하여 지자체에 권고하고,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도
 - 평가단계에서 해당 시군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사업 관리단계를 강화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 도입

2. 평가지표 개발·개편

성과 위주의 부문별 핵심지표 선정·단순화

- 사업 목적의 연계 정도에 따라서 성과지표는 핵심지표와 특성화지표로 구분하고, 핵심지표는 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결과지표 위주로 선정
 - 궁극적인 목적 달성 여부 측정을 위해서 핵심 결과지표 위주로 선정하고, 핵심지표는 부문별로 단순화하여 설정하도록 함
 - 국가균형발전사업 및 충북, 전북 평가지표 모두 핵심지표와 자율지표를 함께 사용하고 있음

표 4-3 | 국가균형발전사업 시도자율편성사업 유형별 핵심성과지표(예시)

분야	사업명	핵심성과지표	공통지표
문화·체육·휴양·여가시설 활용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이용자수(천 명)	만족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문화 재생	문화재생사업 지원 개소수(개소)	
	체육진흥시설 지원	이용률(%)	
교통시설 활용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이용자수(천 명)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자수(천 명)	
	도시형 교통모델	이용자수(천 명)	
생활환경시설 여건개선 정비	주차환경개선 지원	이용률(%)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보급률(%)	
	해양 및 수자원관리	연안침식 복구실적(천㎡), 해안연안 쓰레기 수거량(천 톤)	
농업·임업 기반정비	지역사회활성화 기반 조성	활동 커뮤니티수(개)	
	반려동물산업 육성	유기유실동물 분양, 기증 마릿수 (마리)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참여 방문자수(천 명)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달성률(%)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부자료(2022)

- 국가균형발전사업(2022)의 경우 공통지표는 만족도로 적용하고, [표 4-3]과 같이 목표 달성도를 고려하여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시도자율편성사업의 경우 문화·체육·휴양·여가시설 활용 분야 및 교통시설 활용 분야의 경우 이용자수나 이용률(%), 생활환경시설 여건개선 정비분야의 경우 보급률이나 복구실적 등, 농업·임업 기반정비 분야의 경우 방문자수나 달성률(%) 등으로 명확한 지표로 대체
 - * 증가율이 3년치 평균 증가율 등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단순화하여 '이용자수'로 대체
- 충남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는 충남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있음
 - 즉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결국 저발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여 도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음
- 현재 충남의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크게 관광부문, 기반부문, 산업부문, 삶의 질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으므로 핵심 결과지표 위주로 선정하도록 하고, 핵심지표는 부문별로 1~2개 내외로 단순화하여 설정하도록 함
 - 관광부문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수를 핵심지표로 활용 가능
 - * 해당시설의 이용자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www.tour.go.kr/>)의 해당 시군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수 자료 활용 가능
 - 기반과 삶의 질 부문의 경우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핵심지표로 활용하거나 이용자수나 해당시설의 보급률 등을 활용
 - 산업 부문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특성상 매출액이 발생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매출액이나 고용창출수 등의 자료를 활용
- 다만 모든 사업에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충북사례와 같이 핵심사업 위주로 선정하여 적용

표 4-4 | 충남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유형별 핵심지표(안)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안)
관광	경관개선, 관광시설, 상품, 역량강화, 역사·문화재	이용자수(방문객수) 등
기반	정주, 상하수도, 도로, 생태환경	보급률, 만족도 등
산업	생산, 생산지원, 가공, 가공지원, 유통, 마케팅, R&D, 귀농·귀촌, 일자리, 상권, 전통시장, 제조업	매출액, 고용창출수 등
삶의 질	(평생)교육, 문화·복지, 체육, 환경	이용자수, 만족도 등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22)

시군별·대표사업별 특성화지표 선정

-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 차원에서 균형발전의 포괄성은 강화하되, 발전여력이 미약한 지역에도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함
 - 세종시 건설, 도청 이전 등 중앙과 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발전의 여력이 미약한 지역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안축과 금강축 지역의 건설한 발전을 추진, 지원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
 - 광역 내 지역 뿐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의 특성화 발전을 최대한으로 지원
- 따라서 핵심지표와는 별개로 시·군이 대표사업을 정해 특성화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의 하에서 선정함
 - 충북의 경우 시·군별로 전략사업이 각 지역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3개의 특성화 지표를 선정하여 충북도 균형발전과와 협의 후에 최종 선정함
 - 전북의 경우 시군이 설정하는 사업별 자율지표는 주로 주민의견수렴 횟수, 사업 현상실사 횟수, 행정절차 이행여부, 민원해결 여부,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시행여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여부, 홍보, 박람회 참가횟수 등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핵심지표와 자율지표를 모두 전문가가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함

표 4-5 |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전략사업)의 시군별 특성화지표(예시)

구분	특성화지표
제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 회원 기업 수, 고용 현황, 매출 현황
보은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방문객 수 : 스포츠파크, 속리산 휴양관광지 등 입주업체 매출액 : 동부 일반산업단지 대추 생산량
옥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산업 클러스터 회원사 매출 현황, 고용 창출 기업 유치 수 :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영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객 수 : 와인축제, 국악체험촌, 과일나라테마공원 등 고용 현황 : 국악체험촌, 주류제조면허 취득농가, 과일나라테마공원, 레인보우힐링센터 등 주류제조면허 신규 취득농가 수 : 개인·법인 총계(단순 취득)
증평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사업 연계 국비확보 및 민자유치 실적 시설 방문객 수 : 좌구산 휴양랜드, 증평군립도서관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수율 통한 자격증 취득 비율
괴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산업 종사자 수, 매출 현황, 방문객 수 : 한돈 로컬푸드, 버섯랜드 등
단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시설 매출액, 방문객 수 : 소백산 자연휴양림, 만천하 스카이워크, 다누리센터 등

주 : 단계별 신규 사업추진에 따라, 협의 후 지표 추가 및 변경 가능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2022)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

- 전북의 동부권사업의 경우 기존에 식품 및 관광분야의 분야별로 별도로 평가체계를 구성하고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담당자 인터뷰를 같이 실시하여 평가해왔으나 2022년부터 평가방식을 일원화하여 전면 개선한 바 있음
 - 사업성과지표(50), 내부행정관리지표(20), 외부(만족도)평가(30), 평가개선도(3)로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

표 4-6 | 전북 동부권사업 평가시스템(예시)

구분	세부지표	비고
사업성과지표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지표(25) 자율지표(25) 사업추진 모니터링(분기별) 	자율지표는 시군이 선정하고, 핵심지표와 자율지표는 전문가 평가로 시행
내부행정관리지표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수립의 충실도(신규 14점, 계속 4점) 예산편성 및 절감, 사업집행 및 관리(신규 3점, 계속 14점) 기관장의 관심도, 평가환류 등(신규 2점, 계속 2점) 	정량평가 및 전문가 정성평가 시행
외부(만족도)평가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도 	
평가개선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대비 총점 5점 이상 증가 : 3점 전년대비 총점 3점 이상 증가 : 1점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22)

-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충북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행계획에 대한 연차평가와 시행계획이 끝나는 시점에 최종평가를 함께 실시하도록 함
 -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연차평가와 5년 단위의 최종평가는 앞서 제시한 핵심성과지표와 특성화지표 등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주로 사용하되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도록 함

표 4-7 |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항목(안)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정량평가 (7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지표 특성화지표 만족도 	도 검토
정성평가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시·군정 방향과의 정합성/계획수립의 충실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사업 집행률, 예산절감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기관장의 관심도 홍보실적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지역발전 기여 여부 등 	평가위원이 종합의견 작성
평가개선도 (3~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대비 가점부여 	

3.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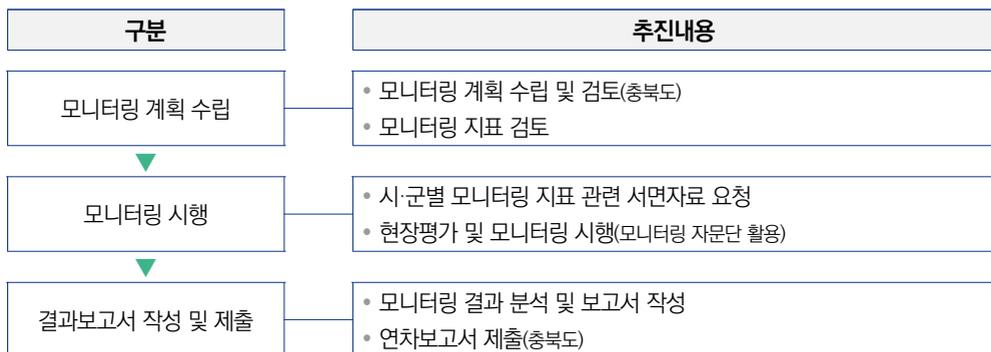
-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포함한 지역발전정책 전반에 해당 시군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추세이므로 충남도의 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해당 지역균형발전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실제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분권화 경향에 부응할 필요
- 현재 충남의 평가지표는 제1단계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사업추진, 사업운영 세 가지 부문에서 30개의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 사업계획단계에서 11개 지표, 사업추진단계에서 7개 지표, 사업운영단계에서 12개 지표를 활용
- 성과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을 세부적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이지만 너무 많은 평가 지표로 문제점 상존
 - 성과 및 투입 측면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정량적인 성과평가 위주로 개편 필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과관리체계 개편

- 현재 충남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시·군 자체평가에 의한 형식적인 추진실적 평가로 끝나고 있으나, 분권적 차원에서 시·군의 정책추진 자율성은 주되 도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정책추진의 자율성은 가급적 최대한 보장하되, 재원지원에 대한 사후적 평가 및 정책 추진의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 평가 및 모니터링은 지역발전정책의 추진보다는 선심성 사업의 선택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책 추진의 긴장을 유지 및 확보하기 위함

- 충청북도의 경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등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문제점 등에 대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모니터링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업내용 및 추진 전략을 개선·보완하여 차년도 사업운영에 반영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충북도와 지자체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매년 연차평가 시 추진상황 근거자료로 활용
- 도 총괄부서, 지역발전연구센터, 모니터링 TF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기준으로 시군에 서면자료를 요청한 다음 현장평가 수행
 - 충청북도 : 지역균형발전사업 모니터링 추진 총괄
 -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문·전문적 지원, 모니터링 수행, 모니터링 종합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충북도 보고
 - 모니터링 TF팀 : 자문 및 모니터링 의견서 작성(지역발전연구센터 권역별 연구팀 활용)
 - 지자체(시군)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및 관리, 모니터링 결과 연계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림 4-2 |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모니터링 추진절차(예시)



자료 : 충청북도(2022),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종합운영지침」

- 모니터링에 따른 검토 의견 및 개선·보완사항을 작성하여 충북도 보고 및 지자체에 권고하고,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 및 목표기간 내 사업완료를 유도함
 -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해당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 유도

표 4-8 |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모니터링 지표(예시)

구분	주요내용
기획 및 계획	• 토지 확보 용이성(시설계획의 경우, 토지소유현황 및 확보율)
사업시행	• 사전 이행절차 수행여부 및 추진현황 • 사업시행자의 여부 및 협의 진행수준 • 계획 대비 공정률 및 예산 집행률 • 애로사항 대응방안 등
운영 및 관리	• 향후 운영관리 방안 수립
성과 관리	• 성과지표 달성 여부

자료 : 충청북도(2022),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종합운영지침」

4. 추진체계 정비

필요성

- 종래와 달리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업무가 증가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응 필요(박진경·김현호, 2019)
 - 충남도 자치행정국 산하 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사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치행정국 산하 균형발전과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제고 필요

지역균형발전센터 설치

- 충남도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제반사무를 지원하여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남연구원에 (가칭)충남지역균형발전센터를 별도조직으로 설치
 - 충북의 경우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 심층적 연구와 정책 제시를 위하여 충북연구원 산하에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있음(박진경·김현호, 2019)
 -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기보다는 이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연구원 내에 설치
 - 충남연구원은 제1기 사업의 기획은 물론 사업선정, 컨설팅, 평가 등 제반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 보유
- 충남연구원의 경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지원하는 부서와의 연계 및 협력강화(박진경·김현호, 2019)
 - 사무 영역의 연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 영역을 중심으로 사무 수행
 - 나중에는 독자영역과 연대 및 협력 영역을 구분해서 중간지원조직 기능의 효율성 제고
- 충남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에 설치 근거 조항 및 사무, 재원 지원 등의 사항을 신설
 - 충남연구원 내 지역균형발전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충남연구원 직제 및 인사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충청북도 지역발전연구센터

제18조(지역발전연구센터 및 권역별 연구팀 운영) ① 권역별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 제시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지역발전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는 설치된 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총괄 운영하며, 권역내의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의회 의원, 주민 등 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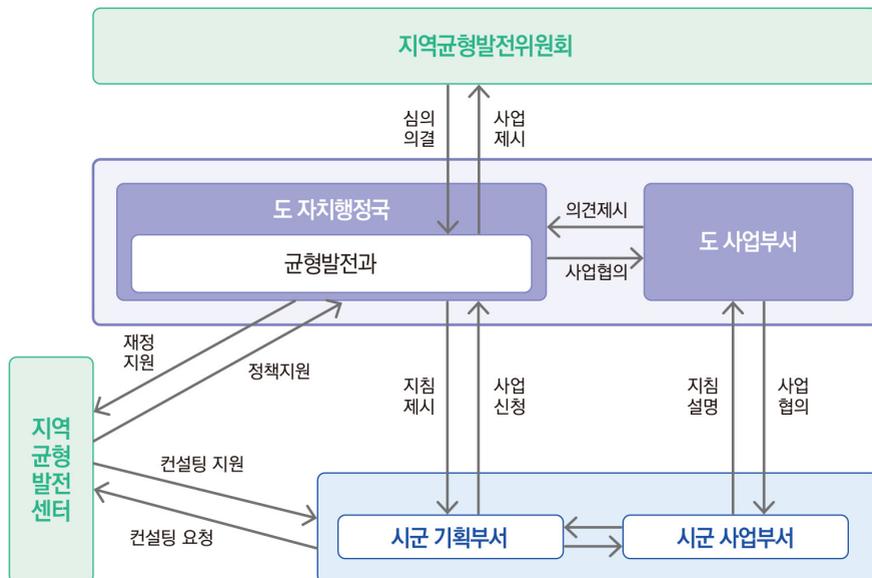
③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권역별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발전연구센터 및 권역별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남도, 시군, 충남연구원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숙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협치 관점의 협력체계를 구축함
 - 충남연구원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센터를 설치하여 충남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사업선정, 계획수립, 사업추진, 평가 등의 전문적 영역에 대한 정책 지원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충남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심의 및 의결
 - 시군은 기획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부와 협력체계를 형성하며, 지역균형발전센터에서는 시군에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

그림 4-3 |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참고문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1),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21.11), 「2022년 국가균형발전사업(자율·제주·세종계정) 성과계획서 수립지침(시도 자율편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21.12), 「2022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지침」.
- 국무조정실(2006), 「성과지표 개발·관리 매뉴얼」.
- 국무조정실(2015),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9.4.15), “생활SOC 3개년 계획안 발표.”
- 기획재정부(2012),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
- 기획재정부(2021.4),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김시백 외(2016), 「전라북도 동부권 관광개발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전북연구원.
- 김현호·박진경·김상민·김도형(2019),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김형오 외(2014),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전북연구원.
- 박진경(2022), “광역주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 박진경·김현호(2019), 「지방분권에 대응한 광역지자체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효율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경·이재연(2018),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적 추진방안: 군특회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원광희(2015),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및 적용방안 연구」, 충북연구원.
- 원광희(2017), 「충청북도 균형발전 전략사업 역량강화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충북연구원.
- 전라북도(2009), 「동부권개발사업 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전북연구원.
- 전라북도(2011),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역 및 종합발전계획」, 전북연구원.
- 전라북도 내부자료(2022.04), 「2021년도 동부권사업 실적평가 추진」.
- 충북연구원(2022), 「충청북도 균형발전정책 15년사(초안)」.
- 충청남도(2007), 「충청남도 균형발전 기본계획(2008~2020)」.
- 충청남도(2013),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충남연구원.
-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충청남도(2019), 「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1단계) 및 기본계획(2단계) 수립 연구」, 충남연구원.
- 충청북도(2013),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충북연구원.
- 충청북도(2018),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17~2021)」, 충북연구원.
- 충청북도(2022),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종합운영지침」.
- 한상욱(2010),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발전방향”, 권역별 균형발전전략 및 방안 합동워크숍, 충청남도.
- 한상욱(2011),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충남연구원.
- 한상욱(2017), 「제3기 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 시군 선정(안) 및 가이드라인 작성」, 충남연구원.